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2025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2024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안내서 (국세청)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국세청)
-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용노동부)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안사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anse.com

.....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 PA 전문 ①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 회계감사 ② 소속회계사 112명 + 세무직원 330명 = 성실한 440명 활동
- 세무대리 ③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 재무자문 ④ 2023년 매출액 711억원으로 240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 경영컨설팅 ⑤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 회계기장 ⑥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 창업지원 ⑦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 가업승계 ⑧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 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세무대리·회계·기장·재무·ESG컨설팅·기업가치평가·IFRS 적용·변환 컨설팅·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Sox 서비스)·금융자문·인수 합병 M&A자문·품질관리심리실·준법감시인·재경본부운영·전문지식정보운영팀·지속가능경영센터·양도증여상속팀·비영리공익팀 대표이사 박윤중 등기이사 장용석·조영우·정 훈·유환철 등 83명 등기이사 파트너 심리실 :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홍재권이사, 염승섭회계사 보완심리

고경호·고두환·고영일·권창현·김경수·김대현·김동욱·김봉수·김영룡·김옥철·김윤정·김중창·김준영·김준일·김태준·김한솔·김현단·박규태·박병준·박윤중·박정렬·박형동·배한성·배익권·서병욱·서혜빈(수습)·손세정(품질관리)·송형곤·양승민·오진탁·유진우·윤운기·이만선·이미지·이샤야·이재권·이종량·이희건·임정훈·장용석·제갈원구·조민기·조영우·조원진·진수미·최영진·표정협·한상표·허정식·홍상연·홍재권·홍희빈·황창연

서초(분실)	070-7668-6865 강민우·곽영미·박지은·선지우·이승환·이현섭·이혜리·정오신
가산분실	02-6011-5517 설찬수·이남재·정 현
부산북(사상)	051-322-8321 공병진·윤재운·이동계
부산지점	051-819-3308 김수영·박지훈·이성태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김치현·이형래·홍영표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대건·이수영·장시연
대전지점	042-525-5558 김형진·이상훈·정대환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이희곤·정영훈
일산지점	031-817-4189 김중운·송주호·최민욱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조승범·김성우
울산지점	052-263-7006 방수혁·오승혁·장효철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윤경만·박희원·이우목·이미경 경영지도사

서초명달지점	070-5101-1651 김용환·김수범·강용희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장원택·최정화
서초방배지점	6245-7502 정 훈·김태경·라선희
강남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임진호·안영호
여의도지점	6959-2378 변남진·양용석·오유준
센트럴지점(용산)	2209-0710 유환철·유지운·윤현철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원영민·이원재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허 근·고경환
중기(마포)	02-312-2255 이익재·이준상·이승호

안사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사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 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능동창업적 창조활동함.(02-829-7575)

1. 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2.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3.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 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 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 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을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4.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5.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 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6.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7.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8.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9.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10.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11. 외국 · 해외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12.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상장코스닥사 사외이사취임, 세무고문,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회계·세무·경영분야 겸직가능,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 교육·훈련강의저널
+ CEO·CFO·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가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 부담금의 유형과 계산 2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각종 소득과 재산범위 및 평가를 3
- ✓결혼과 출산의 세무상 혜택점과 불리한 쟁점 4

이달의 특집

- ✓2025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5

2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0(월)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마감일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중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0(목)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5(화)	부가가치세 제2기분 환급
28(금)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개별소비세(유류 등) 신고납부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제4기분 신고납부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자진신고납부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무정보

-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안내 (국세청) 89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107

노무정보

-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용노동부) 134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1월) 144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공과 부담금의 유형과 계산 - 안세재경저널 2025/1/1일자 통권 1708호

부과대상	해당액 계산방법, 과세이유, 부담주체
주민세 중업원분	월급여총액×0.5%(중업원 50인 이하는 면세), 지급사업주가 부담
근로소득세	총 근로소득 - 소득공제 금액에 대하여 다단계누진세율(6%~45%) 적용함. 약 50% 근로자가 면세점이하임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최종납부세액의 10% 해당액(세율 0.6%~4.5%), 소득자 부담
건강보험료	총급여액×7.09%(50% 본인, 50% 고용주부담) (근로자의 실의료비 해당액의 약 50% 충당목적)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의 0.9182%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12-13% 내외 적용함
국민연금보험	총급여액×9% 중 50% 본인, 나머지 50%는 고용주 부담, 은퇴후 국민연금 매달 수혜
고용보험료	급여의 1.8%(근로자 50% 부담, 사업주 50%), 근로자 실직시 생활안정 및 재취업촉진, 취업알선자금
산재보험료	광업(5.76%), 건설업(3.56%)로 높고, 기타의 사업은 급여×(0.66%~0.96%),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보상, 고용사업주가 전액 부담
노조회비	각 직장의 노동조합규약에 따라 천차만별(급여의 약 1-3% 내외임), 노조회계 투명공시시 기부금 비용인정혜택
퇴직연금	중속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퇴직급여보장법 적용(퇴직금은 연봉의 10% 내외 적립, DC형이나 DB형 퇴직연금 외부적립 후, 실제 최종 퇴직시 퇴직금 수령함)
총 합계	공과금 22% + 근로소득정산 종소세율 평균 약 20% + 퇴직금 적립율 10% = 평균 최소 52% 내외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각종 소득과 재산범위 및 평가율

- 안세재경저널 2024/1/8일자 통권 1709호

소득·재산	부과계산방법, 소득평가율
주직장급여	총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율 7.09%를 근로자 본인이 50%, 회사가 50% 부담
다른 소득	연간 소득 총액에서 연 2천만원 초과액의 7.09% (연간보수의 다른 소득 - 2천만원)×소득평가율×7.09%
이자·배당	총소득평가율 100%로 함(비용공제금액 없음)
사업소득	총소득평가율 100%로 함(실제 매출대응경비는 비용반영 계산됨)
기타소득	세후순액(법정경비 80%나 60% 제외 후 40% 소득) 100%로 함
알바근로소득	소득평가율 50%로 함(나머지 50%는 다른 직장 부담)
일용근로소득	1개월 이상 근무 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
자유직업사업소득	지급총액×3.3%(매월) 원천징수납부 후 종소반영
연금소득	총소득평가율 50%로 함(연금이므로 평가율은 반임)
퇴직소득	일시소득이므로 부과되지 않음
양도소득	일시소득이므로 부과되지 않음

◎ 결혼과 출산의 세무상 혜택점과 불리한 쟁점

- 안세재경저널 2025/1/15일자 통권 1710호

과세쟁점들	결혼, 출산 등의 세무상 유리한 점, 불리한 점들
부부 별도 과세	부부간에 부동산 재산과 금융재산 명의 별도·독립 관리시, 종합소득 별도 과세, 합산 안함
배우자공제	소득 없거나 연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소득공제 150만원 적용
자녀세액공제	2명 기본 연 35만원 + 초과 1명당 연 30만원 세액공제 적용
출산연도 세액공제	출산 1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
자녀증여공제	모든 자녀별로 10년 기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적용함
혼인증여재산공제	자녀 혼인시 일반공제에 더해 1억원 추가공제 적용함(혼인신고일 전후 2년내 적용)
배우자증여공제	배우자간 증여시 소급 10년 기간 합산액 6억원씩을 증여공제 가능함
법인설립공동주주	법인설립자본금을 부부가 공동출자하면 향후 배당소득 분산으로 저율 과세됨
공동창업급여분산	법인, 개인사업자의 공동창업 후 실제 근무시 배우자급여의 비용처리로 낮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① 1세대는 결혼한 가족이 기본임(30세 이상 소득자나 이혼자도 1세대임) ② 30세 미만, 미혼자는 과세(1세대 1주택 적용안됨)
혼인 2주택 비과세	각자 1주택 보유자의 결혼으로 2주택 되면 5년내 먼저 양도주택 비과세





2025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

- 중소기업부 -

1장 기술개발자금 지원

1-1. 창업성장기술개발(R&D)

사업개요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창업성장 기술개발 (R&D)	(내역사업) 디딤돌, TIPS (지원규모) 1,765개 기업, 1,284억원 (지원내용) - (디딤돌)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원 미만 중소기업 지원 - (TIPS) 일반형, 다테크 TIPS 지원	(내역사업) 디딤돌, TIPS (지원규모) 1,050개 기업, 1,150억원 (지원내용) - (디딤돌) 지원규모* 및 신산업 창업기업 지원업력** 확대 * 지원규모 확대 : ('24) 1년, 1.2억 → ('25) 1.5년, 2억 ** 신산업 분야 기술창업기업(신산업창업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준용)에 한해 창업 10년까지 지원 - (TIPS)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TIPS(3년, 12억원) 신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신산업 분야 기술창업기업은 10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5년, 2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TIPS	일반	최대 2년, 5억원		
	딥테크	최대 3년, 15억원		
	글로벌	최대 3년, 12억원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2개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최대 1.5~3년, 2~15억원 지원
 - 디딤돌(231억원) :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 고도화기술 등 성과 창출이 가능한 도약기술을 단계별로 지원
 - TIPS(919억원) : 창업기획자 등 팀스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 창업기업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신규) : 총 1,050개 과제 내외
 - (디딤돌) 350개 (TIPS) 700개
- 지원금액(신규) : 1,150억원(디딤돌 : 231억원, TIPS : 919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디딤돌) 4~6월 (TIPS) 상시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가점 증빙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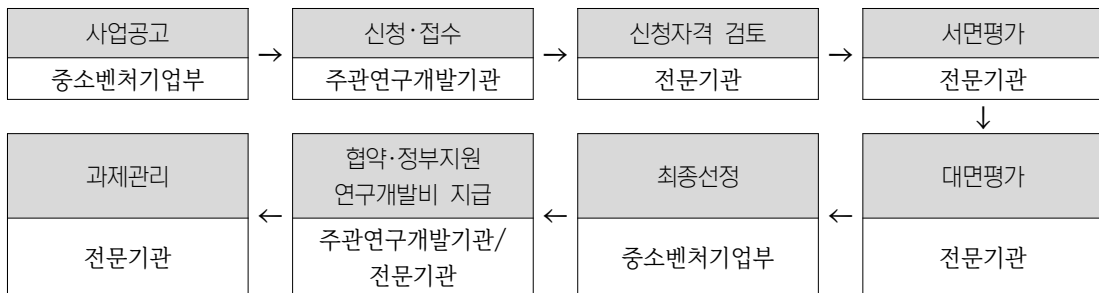
● 선정평가 : 서면 또는 대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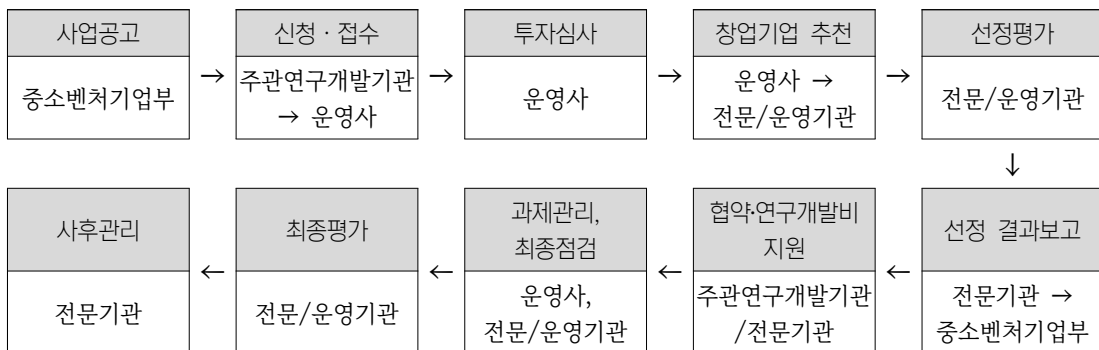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기술성·사업성, 선행연구 성과, 연구개발역량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① 디딤돌(세부추진절차는 각 공고에서 확인)



② TIPS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신청 창업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운영사) 창업기획자, 초기 전문VC, 선도·벤처기업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디딤돌) 기술개발과

- (전화) 044-204-7770 (이메일) till09@korea.kr
- (TIPS) 신산업기술창업과
(전화) 044-204-7652 (이메일) psh0912@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디딤돌) 창업성장사업실
(전화) 044-300-0551~0568 (이메일) 331@tipa.or.kr
 - (TIPS) 팁스글로벌실
(전화) 02-2280-0461 (이메일) tips@tipa.or.kr

- 기타 : 사업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도약_일반)과제 제1차 시행계획 공고
 - (경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 팁스(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
 - (경로)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공통)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기업

내역사업	지원대상
수출지향형	(수출) 매출액 50억 원, 전년도 직·간접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소부장) 지정공모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민간 先 투자를 받은 기술집약형 기업 (후불형)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는 기업 (전략형)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을 보유한 기업
시장대응형	(일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분야 또는 소부장분야 기술을 보유한 기업 (구조혁신)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지원조건 : 내역사업별 총 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이내	65% 이내	자유응모(품목지정), 지정공모
시장확대형	최대 3년, 36억 이내	75% 이내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이내		

신청제외 대상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2-4년, 5-36억 원 이내 지원
 - 수출지향형(176억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32억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효과·효율성 제고 및 성과창출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연계형, 협력(협업)형, 성과형 등 다양한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271억원) :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수요대응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총 779개 과제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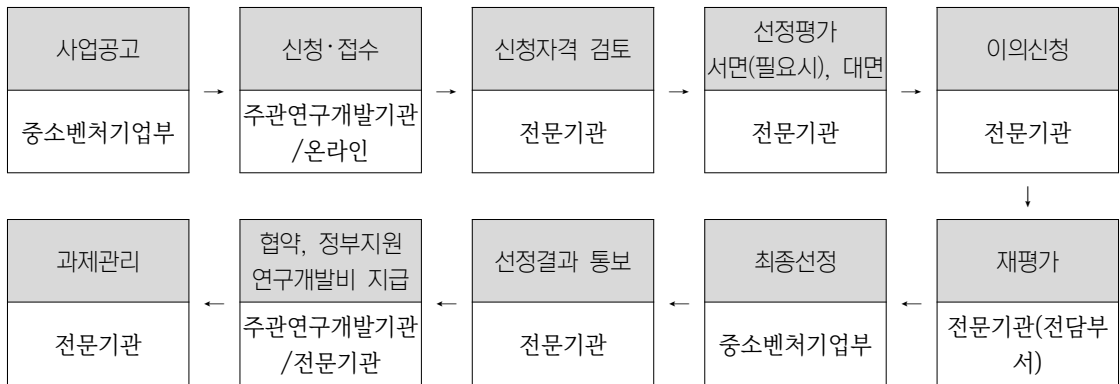
● 지원금액 : 1,179억원(신규)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5월

-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서류 등
*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선정평가 : 서면 및 대면 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심사·평가 내용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전화) 044-204-7766 (이메일) sandoll@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전화) 044-300-0534, 0537, 0541-0547 (이메일) 311@tipa.or.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시스템 문의(1877-2041),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IRIS-사업정보-사업공고-마감-'기술혁신개발사업' 검색
 - * 세부 지원 내용이 세부사업별 상이하므로 세부사업별 공고 확인

1-3. 산학연Collabo R&D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R&D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지원유형	일반형 예비연구(8개월, 0.5억원 이내)	(좌동)
	일반형 사업화R&D(최대 24개월, 2.6억원 이내)	(좌동)
	-	컨소시엄형 예비연구(8개월, 최대 2억원 이내)
지원분야	일반형 : 자유공모	(좌동)
	-	컨소시엄형 : 분야지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 2단계(사업화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 * 일반형 예비연구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지원조건 : 단계별 지원(1단계 예비연구 과제 완료 후 2단계 사업화 R&D 신청·평가·수행)

내역사업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지원방식
컨소시엄형(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1단계 (예비연구)*	8개월, 2억원 이내	75% 이내	분야지정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10.4억원 이내		
일반형(산학협력,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이내		자유공모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2.6억원 이내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성 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일반형 2단계 사업화R&D는 '23~'24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신청제외 대상

-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기술로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회수금·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경우(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함)
-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 부도 상태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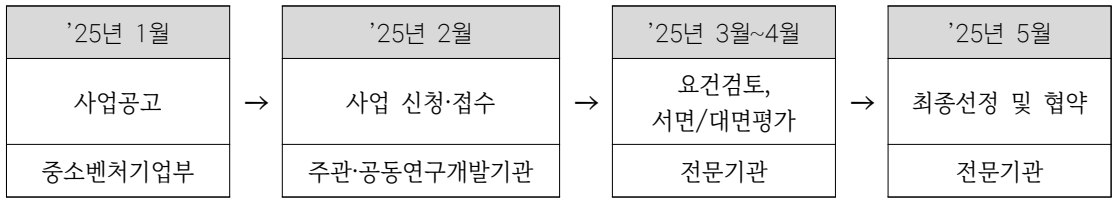
구분	일반형 과제	컨소시엄형 과제																					
과제 유형	<p>개별과제(1:1 협력)</p> <table border="1"> <tr> <td>과제1</td> <td>과제2</td> <td>과제N</td> </tr> <tr> <td>주관(기업)</td> <td>주관(기업)</td> <td>주관(기업)</td> </tr> <tr> <td>공동(대학)</td> <td>공동(연구소)</td> <td>공동(대학)</td> </tr> </table>	과제1	과제2	과제N	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공동(대학)	공동(연구소)	공동(대학)	<p>개별과제의 묶음 과제(多:多 협력)</p> <table border="1">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컨소시엄형 과제 A</td> </tr> <tr> <td>세부과제1</td> <td>세부과제2</td> <td>세부과제N</td> </tr> <tr> <td>주관(기업)</td> <td>주관(기업)</td> <td>주관(기업)</td> </tr> <tr> <td>공동(대학)</td> <td>공동(연구소)</td> <td>공동(연구소)</td> </tr> </table>	컨소시엄형 과제 A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N	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공동(대학)	공동(연구소)	공동(연구소)
	과제1	과제2	과제N																				
	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공동(대학)	공동(연구소)	공동(대학)																					
컨소시엄형 과제 A																							
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N																					
주관(기업)	주관(기업)	주관(기업)																					
공동(대학)	공동(연구소)	공동(연구소)																					
분야	제한없음	지역전략분야(레전드50+ 등), 국가전략기술																					

● 지원규모 : 570억 원(신규 451억 원, 계속 119억 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월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등
- 선정평가 :
 - 1단계(예비연구) : 서면평가 → 요건검토 → 대면평가 → 이의신청평가 → 선정·협약
 - 2단계(사업화R&D) : 요건검토 → 대면평가 → 이의신청 평가 → 선정·협약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등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5, 7767
(이메일) ynjng@korea.kr, pch77@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전화) 044-300-0652, 0654, 0658
(이메일) kanghg@tipa.or.kr, sch@tipa.or.kr, yjsng@tipa.or.kr
- 산학연 매칭기관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전화) 051-606-7416 (이메일) 2618@kibo.or.kr
 - 한국산학연협회 교육기획팀
(전화) 044-410-3343 (이메일) ryuinno@auri.go.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1877-2041)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 컨소시엄형 과제 트랙이 '25년부터 도입되어 전년도 사업공고와 지원분야 등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신청·접수 전 '25년 공고 확인 필수

Q&A
Q.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중인 기관만 1단계 신청이 가능한지 A. 1단계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종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나, 2단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인정서 제출 필요

- Q.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는 모두 2단계(사업화R&D)를 수행할 수 있는지,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2단계(사업화R&D)를 신청할 수 있는지
 A.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2단계(사업화R&D)를 신청하여, 2단계(사업화R&D)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후 2단계(사업화 R&D)를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음

2장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인프라지원

2-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여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신사업(서비스) 창출 등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1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50% 이내) • 고도화 1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12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사업비 50% 이내) • 고도화 2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 • 통합솔루션 4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억원(총사업비 50%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추진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서비스 분야)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공급기업 없이 단독 참여 불가)
 - *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신청제외 대상

- (1)~(4) 도입기업만 해당, (5)~(8) 도입·공급 기업 모두 해당
- (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20~'24)은 '25년 신규과제 참여 불가 (고도화 과제만 참여가능하며, 도입기업 기준 고도화 과제는 1회만 참여가능)
 - (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3) 스마트공방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4)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5)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유흥·향락업, 주점업
- (6)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8)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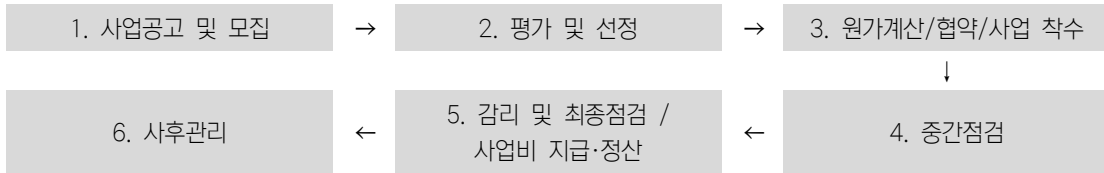
지원내용

- (신규 구축) 선별된 기업에 대해 핵심 BM 서비스 창출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DX솔루션 구축 지원(총예산 60억원)
 - 12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천만원(총사업비 50% 이내)
- (고도화) 핵심 솔루션 신규 도입 후 매출·고용·고객만족도 등 높은 성과 달성 등 우수기업에 솔루션 고도화 지원(총예산 25억원)
 - 25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1억원(총사업비 50% 이내)
- (통합솔루션) 서비스분야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기능·연계·추가·개선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패키지 형태로 개발지원 (총예산 20억원)
 - 4개 컨소시엄 내외, 컨소시엄 당 최대 5억원(총사업비 50% 이내)
 - * '25년 추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25. 3~4월 예정)의 지원 내용 확인 필요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3-4월(예정)
- 신청방법 :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보활용동의서, 공급기업의 투입인력 경력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총 3단계 평가 (①현장평가(실사)→②서면평가(필요시)→③대면평가)를 통해 최종지원대상 선정
 - * 현장평가, 서면평가(필요시) 및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 원가계산을 통한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후 최종 협약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추진 의지 및 지원 필요성, 사업추진 목표·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역량, 파급효과 등



문의처

- 중소기업부 제조혁신과
(전화) 044-204-7272 (이메일) antyx@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성장사업실)
(전화) 044-300-0553 (이메일) mi5347@tipa.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Q&A

Q.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을 반드시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나요?
 A.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솔루션 구축을 희망하는 도입기업과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공급기업이 반드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 통합솔루션의 컨소시엄의 구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컨소시엄은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관련 국내 중소·공급기업(IT서비스 기업), 클라우드 사업자 등으로 구성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용어 설명

- BM(Business Model) : 제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모형 지원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고객경험혁신) : 서비스 공급자(제공사)와 소비자(고객)를 상호 연결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시스템(솔루션)을 개선

2-2. 혁신제품 지정**사업개요**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최근 5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수행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 신청 전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신청제외 대상 ※ 모집공고 확인 필수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 *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 물품식별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제품
 - * 공고마감일 이전에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필수
- ▶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 * 신청제품이 직접생산(또는 협업승인**)이 아닌 단순 공급 또는 OEM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평가 이후에 라도 ‘조달적합성검토’ 단계에서 보류 또는 제외대상이 될 수 있음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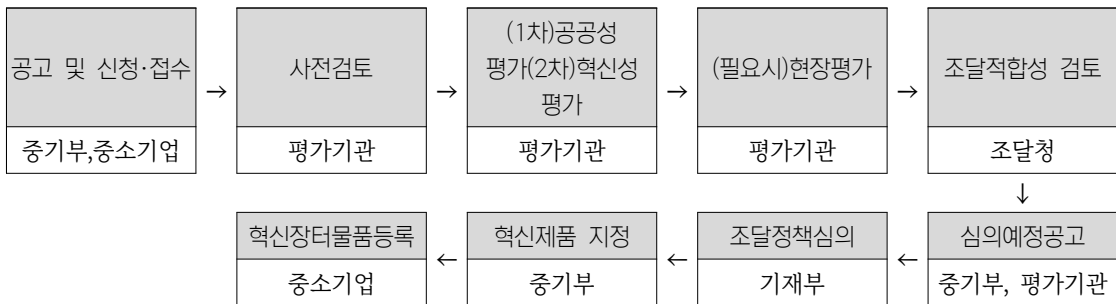
지원내용

-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등을 평가·심사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3년)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매칭 행사, 홍보 등 판로지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월, 8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증빙서류 등
- 평가·심사 주요 내용 : 제품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
- 선정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전화) 044-204-7765, 7767 (이메일) ynjng@korea.kr, pch77@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전화) 044-300-0713, 0714 (이메일) innopro@tipa.or.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 공고
- (경로) SMTECH > 정보마당 > R&D사업공고

용어 설명

물품분류번호 : 물품의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번호를 매긴 것
 세부품명번호 : 물품분류번호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번호를 매긴 것

2-3.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술거래시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전 기술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지원사업 신설 및 변경 (기반조성)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	(삭제)
	-	(신설) 글로벌 기술수요발굴·매칭 지원사업
	-	(신설) 기술거래 서포터즈
	-	(신설) 공급기술 정보활용 촉진 지원사업
	-	(신설)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 지원금액 : 가치평가비용 5백만원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 지원금액 : 가치평가비용 10백만원
지원내용 변경 (통합지원)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기술이전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컨설팅 및 사업화 제반비용 지원) • 지원규모 : 핵심 4개, 일반 36개 • 지원금액 : 핵심 106백만원, 일반 36백만원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기술이전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설비 및 사업화 제반비용 지원) • 지원규모 : 핵심 4개, 일반 8개 • 지원금액 : 핵심 210백만원, 일반 110백만원 • 지원대상 : 기술료 50백만원 이상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술이전을 통한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신청제외 대상

- ▶ 기업 부도
- ▶ 조세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4대보험)을 체납중인 기업
-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에 있는 기업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기업
- ▶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공급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공급·수요기술의 고도화, 기술거래를 위한 중개수수료 및 가치평가 비용 지원

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기술수요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사업	(글로벌 기술 수요발굴·매칭) 베트남 등 해외 기술수출을 위한 해외 현지 기술수요정보 발굴 및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지원(10건 내외)
	(기술거래 서포터즈) 중소기업 접점을 보유한 유관기관 소속 인력을 “기술거래 서포터즈”로 등록하여 기술이전 수요를 발굴하고 계약 체결시 보상금 지급(60건)
공급기술 DB 고도화사업	(공급기술 DB 제작 지원사업) 텍스트 중심의 기술정보를 스마트화하여 공급기술정보의 직관성을 제고하는 기술설명자료(SMK) 제작비용 지원(300건 내외)
	(공급기술 정보활용 촉진 지원사업) 기술보유기관이 자체 선별·제작한 기술설명자료(SMK) 정보등록·공유 및 기술거래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100건 내외)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사업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30건 내외)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과 민간기술거래기관의 공동중개 성사시 기술거래 인센티브 지원(50건 내외)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사업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기술의 기술가치평가 비용지원 및 적정 기술거래 가격정보 제공(5건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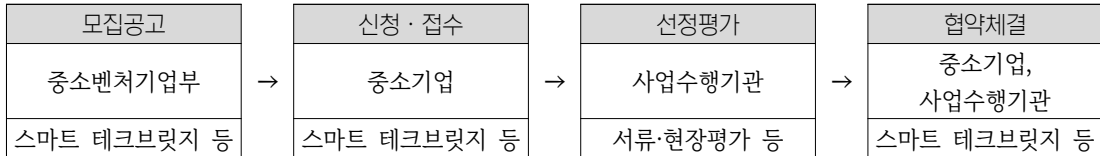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기술이전 기업(예정기업 포함) 중 사업화 역량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밸류-업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사업화 통합집중지원

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사업화기획 지원사업	전문기관과의 매칭을 통한 이전기술 기술사업화 컨설팅 비용 지원	12개사 내외
상용화 로드맵 지원사업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제반 비용 지원	
이차보전 지원사업	기술이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인수보증에 대한 대출이자 비용 지원	40개사 내외

- 지원규모 : 총 607개 내외(기반조성사업 555개 내외, 통합지원사업 52개 내외)
- 지원금액 : 총 2,680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2월
- 신청방법 :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 온라인 신청·접수, 이메일 등
- 제출서류 : 신청 기본서류,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개별 사업공고문 참조(세부 사업별 상이)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784 (이메일) rhkstmd03@korea.kr
- 기술보증기금 전국 8개 기술혁신센터
-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https://tb.kibo.or.kr>) 참조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4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 소통과 공유 > 공지사항 > 공지사항

3장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기술유출 방지

3-1. 선도형 제조혁신

사업개요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
 센서 등 구입 지원 및 ICT를 접목한 생산현장 맞춤형 생산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서 제출 →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사업신청서 완성된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고도화1	기업당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사업별 상이)

- 우대사항 : 지원 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유형	지원내용
고도화 ¹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을 지원하여 목표 수준 중간 ¹ 달성을 위한 구축지원

● 지원규모

사업명		지원 과제 수
선도형 제조혁신(스마트공장)	정부일반형(레전드50+ 포함)	510
	자율형공장(2년)	20
	대중소상생형	250
	부처협업형	150
	탄소중립형	25
	디지털협업공장	신규6컨소(30)

● 지원금액 : 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 공고시기 : '24. 10. 7.(월) /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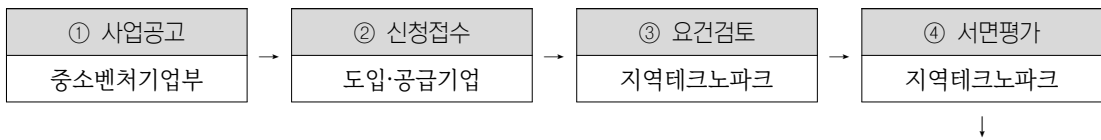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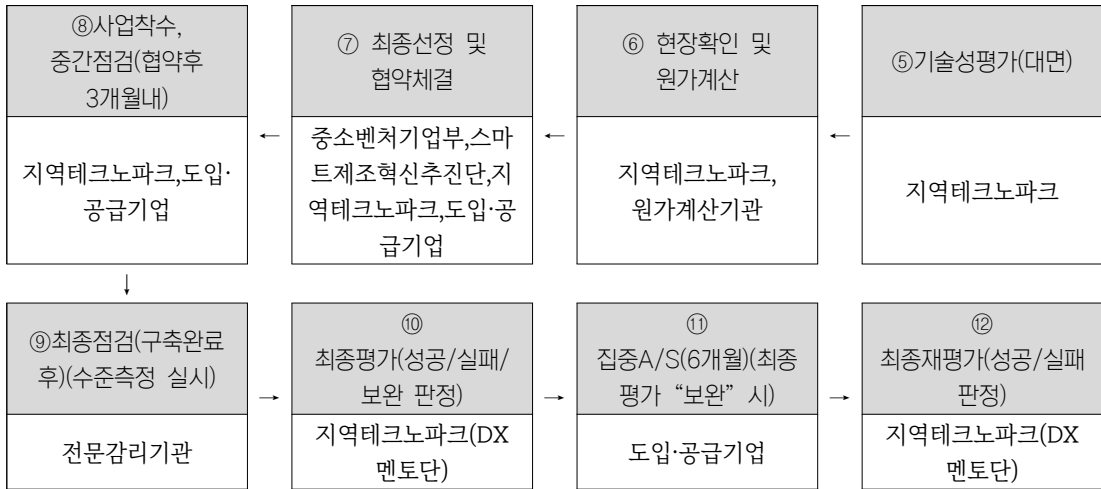
● 선정평가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능형제조혁신실
(전화) 044-300-0960 (이메일) smartfactory@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사업공고

3-2. 디지털협업공장 구축사업

사업개요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사업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편성시 현금만 가능 <table border="1"> <tr> <th rowspan="2">정부 지원금</th> <th colspan="2">민간부담금</th> <th rowspan="2">합계</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r> <td>200 (50%)</td> <td>200 (50%)</td> <td>- (-)</td> <td>400 (100%)</td> </tr> </table>	정부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200 (50%)	200 (50%)	- (-)	4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편성시 현물도 가능(민간부담금 중 20%) <table border="1"> <tr> <th rowspan="2">정부지원금</th> <th colspan="2">민간부담금</th> <th rowspan="2">합계</th> </tr> <tr> <th>현금</th> <th>현물</th> </tr> <tr> <td>200 (50%)</td> <td>160 (40%)</td> <td>40 (10%)</td> <td>400 (100%)</td> </tr> </table>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200 (50%)	160 (40%)	40 (10%)	400 (100%)
	정부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200 (50%)	200 (50%)	- (-)	400 (100%)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200 (50%)	160 (40%)	40 (10%)	400 (100%)																			
표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공장 표준적용시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공장 표준* 적용 필수 																				

- * ① (IEC 62541) OPC 통합 아키텍처,
- ② (IEC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 공급기업 컨소시엄,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 지원조건 : 총 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금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0억)

구분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개별 스마트공장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고도화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고도화 (동일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준 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0.5억원

- 우대사항 : 대표기업 기준으로 적용하며,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부여

구분	항목	세부내용	제출서류
1	수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내)
2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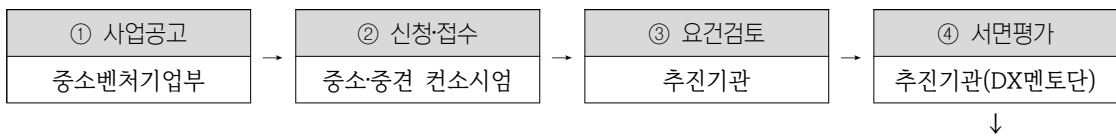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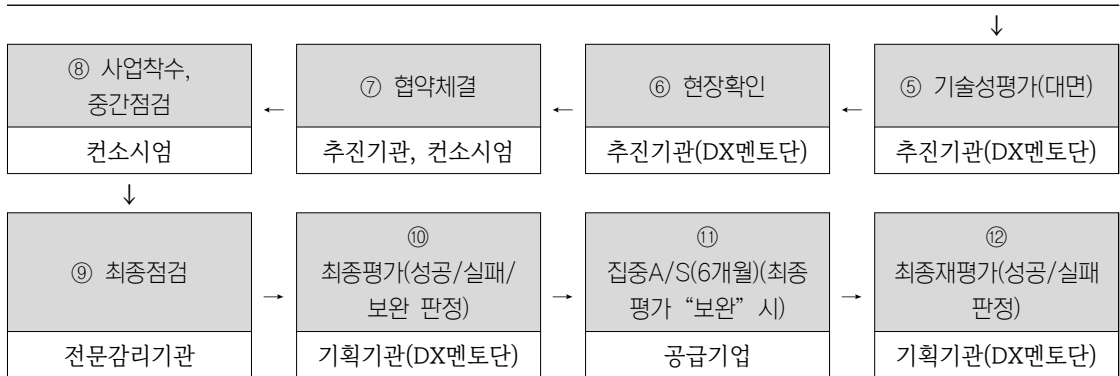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협업체 중심의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지원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지원규모 : 6개 컨소시엄 내외
- 지원금액 : 60억원(정부안)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 10. 7.(월) ~ '25. 1. 6.(월), 17시까지
- 공 고 명 : 2025년 디지털 협업공장 구축사업 공고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술성평가(사업계획서) → 현장확인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추진절차





문의처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지능형제조혁신실
(전화) 044-300-0954, 0961 (이메일) smartfactory@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명 : 2024년도 디지털협업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 사업공고

Q&A
<p>Q. 디지털협업공장 구축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p> <p>A.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개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p> <p>Q. 사업 신청시 조건사항이 있나요?</p> <p>A.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최소 5개이상 참여하고, 공급기업과, 기획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지원대상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공고 내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항목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

용어 설명

- 도입기업 :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기획기관 : 디지털협업공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수립 및 컨소시엄 관리 등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컨소시엄 : “디지털협업공장”의 수행하기 위해 기획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협업단
- (IEC 62541) OPC 통합 아키텍처 : 설비(하드웨어)-플랫폼-솔루션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신 표준
- (IEC 63278) Asset Administration Shell for industrial applications (AAS) : 설비의 관리를 위한 센서 및 각종 제원을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 캡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플랫폼과 솔루션 간 데이터 교환

3-3. 자율형공장 구축지원

사업개요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수준확인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지원내용

- (진단·기획) 기업별 공정분석,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기획 등
- (구축) AI·디지털트윈을 적용,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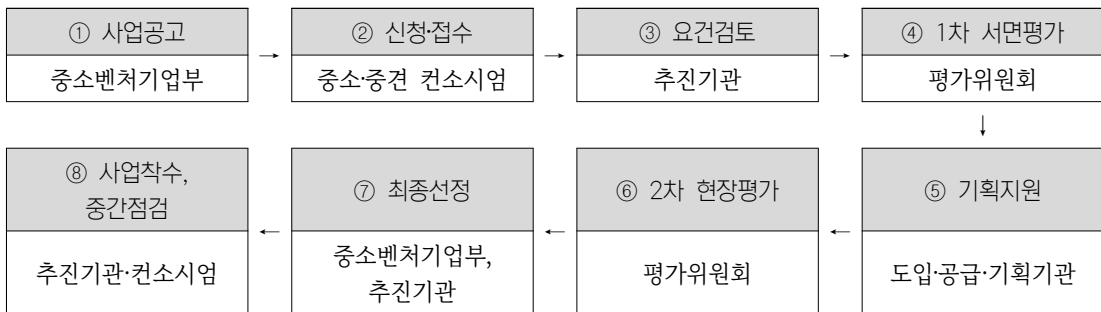
- 지원조건 : 총 사업비 50% 이내, 정부지원금 연 3억원, 최대 2년

구분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고도화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AI·디지털트윈 적용) 	6억원(2년)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4년 10월 ~ '25년 1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서면평가(사업신청서) → 기획지원 → 기술성(현장심층)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술성(현장심층)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전문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 * 사업별 심사·평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능형제조혁신실
(전화) 044-300-0960 (이메일) smartfactory@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사업공고

3-4.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제조공정에 로봇 도입을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산업재해 감소 등 제조산업의 디지털전환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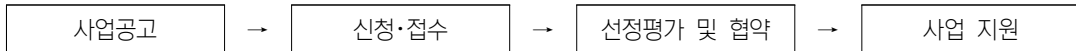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도입기업이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하고 로봇공급기업(SI기업)이 공급기업으로 참여
- 우대사항 (각 2점, 최대 6점)

구분	항목	세부내용
1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동법 시행령 17조의2와 관련하여 뿌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글로벌강소기업 1,000+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3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 수행기업	•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대상공정에 대한 「로봇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
4	국내복귀기업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한 기업
5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입주기업	•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도입 공정 로봇시스템 구현의 적정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도입 및 공급기업역량 등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추진절차 :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혁신사업본부
(전화) 053-210-9622~7 (이메일) (factory@kiria.org)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참고사항

① '25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5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사업안내-사업공고' 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kiria.org)의 '알림마당-사업공고' 참고

Q&A

Q.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국내에 공장을 보유한 제조 관련 기업이라면 중소·중견기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국내 제조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Q. 한 곳의 로봇공급기업이 다수 수요기업과 함께 사업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공급기업은 복수 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도입기업은 하나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Q.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내 타사업과 동시에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신청 마감일 기준 스마트공장 사업을 수행 중인 도입 기업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 상세 내용은 공고문 붙임 1(동시선정 / 신청제한) 참고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는 중인 기업
- ▶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기업
-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최근 연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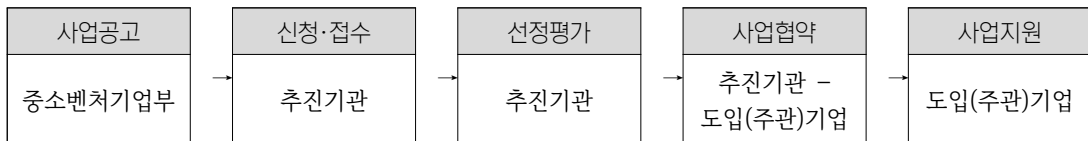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세부내용 : 제조기반기업의 현장인력 부족, 낮은 생산성 등 애로해소를 위한 현장 맞춤형 자동화장비 구축 지원
 - * 단순 범용 공정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규모 : 7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71.25억원(기업당 최대 95백만원 지원)

신청·접수

- 공고시기 : '24년 11월 ~ '25년 1월
- 신청방법 : 홈페이지(pms.kpic.re.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심사 → 대면(발표)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 사업비심의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도입기업의 공정자동화 구축계획에 대한 설비 적정성, 사업 추진 및 계획의 구체성, 보급·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

● 추진절차



* 추진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

문의처

- 추진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 부리산업기반실)
(전화) 02-2183-1624~5 (이메일) ppurisc@kitech.re.kr
- 사업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 ① 2025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5년도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공고
 - (경로)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 사업신청 홈페이지 ‘공정자동화 > 사업소개 > 공고’

Q&A
Q.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은 중견기업이 지원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제조기반기업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Q.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등 타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과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공정 및 라인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본 사업은 도입기업이 주관이 되어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컨소시엄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6.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사업개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고 스마트화 수준을 진단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제도 운영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지원규모	1,500개사 내외	2,0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기업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수준 상승이 예상되는 국내중소·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가능)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지원규모) : 2,000개사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능형제조혁신실
(전화) 044-300-0955, 0960 (이메일) smartfactory@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사업공고

3-7.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사업개요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공급기업의 자발적 역량강화 및 도입기업의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촉진하도록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지원 내용	공급기업 역량진단 자체모델 활용	공급기업 역량진단 모델 내 경영,기술역량 평가지표에 기술보증기금 모델(KTRS-FM) 도입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지원조건 : 역량진단비용 80%

구분	기본역량진단	심화역량진단
지원조건	진단비용 80% 지원	

신청제외 대상

- ▶ 후·폐업 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최근 3년 이내에 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 ▶ '23년 공급기업 역량진단(기본·심화) 후, 6개월 미만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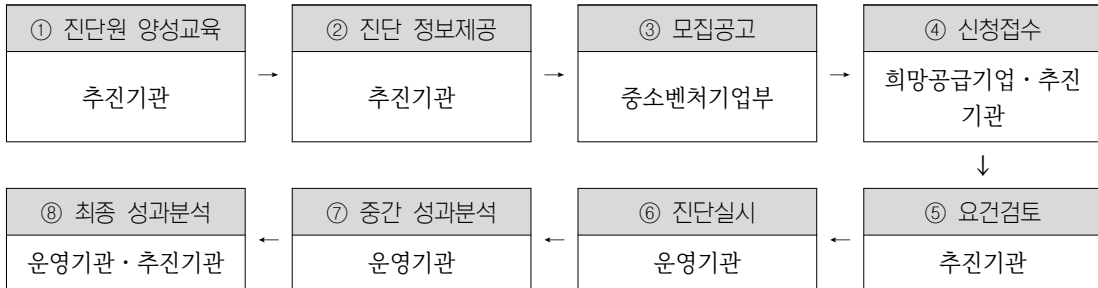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중견 공급기업의 역량진단을 위한 역량진단(기본·심화) 지원
 - (기본역량진단) 개발된 역량진단모델을 기반으로 전문진단원의 현장방문을 통해 진단표에 따라 진단 후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 (심화역량진단) 단계별 기본진단 후 분야별 세부 진단 및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공
- 지원규모 : 공급기업 950개
- 지원금액 : 3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세부사업 공고시점부터 예산 소진까지 수시모집

- 신청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역량진단 신청서 및 관련 동의서 등 공고문 확인 요망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화가능성, 컨소시엄 역량,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전략 등
- 추진절차



* 관련 내용은 세부사업 공고 확인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DX혁신실
(전화) 044-300-0972 (이메일) smartfactory@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4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 사업공고

3-8.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사업개요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제조DX멘토단)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전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사업 개편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사업 스마트공장 AS 지원사업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 비중	지원 규모
사전기획	스마트공장 구축을 포함한 제조DX 전략 수립, 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85%	1,000개사
구축지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지도 및 노하우 전수 등	85%	100개사
사후관리	부품수리·교체, H/W·S/W 업그레이드 등 솔루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 등	50% (최대 19백만원)	250개사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월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 안내 → 사업 공고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화) 044-300-0974(사전기획, 구축지도), 044-300-0958(사후관리)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사업문의(1357), 정책정보(www.bizinfo.go.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4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세부사업 공고
 - (경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업안내 -사업공고

3-9.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사업개요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을 통해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저장된 제조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우대사항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 (3) 제조데이터 표준 (5)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 (3) 제조데이터 표준 (5) (신설) 제조데이터 상품 실 구매수요 확보 (5)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데이터를 수집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우대사항 : 아래항목 해당 시 선정평가 가점 반영(최대 5점*까지 인정)
 - *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실적(3점), 제조데이터 표준 적용(5점), 제조데이터 상품 실구매수요 확보(5점)
 - ※ 우대사항은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참조

신청제외 대상

- ▶ 기업의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제재처분 조치 기간 중인 기업의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중소·중견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

- 지원규모 : 25개 개업 내외(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지원금액 : 12.5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3월(예정)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선정절차 : ①요건검토 → ②선정평가 → ③현장확인 → ④최종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 이해도 및 필요성, 사업수행 공정 및 수행방안, 수행 결과물 및 상품화, 프로젝트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조데이터전략실
(전화) 044-300-0941, 0946 (이메일) smartfactory@tipa.or.kr
- 사업관리시스템 : www.smart-factory.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 가능
- 공고명 : 2024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모집공고
- (경로) home→사업안내→사업공고→사업공고

3-10.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사업개요

중소기업 핵심기술의 유출 및 탈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킹·보안관제(기술지킴서비스), 물리적 보안시스템(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1.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지원사업별 세부 공고문 참조

신청제외 대상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 다만,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인정한 기업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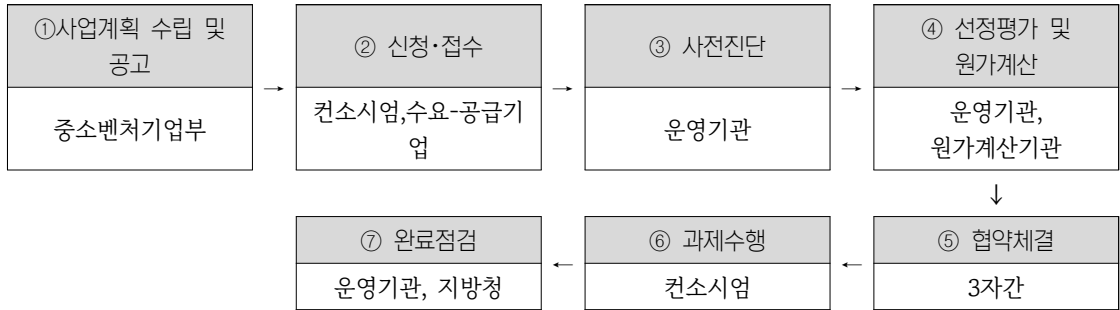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
 -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 관리 할수 있는 보안시스템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40% ~ 80% 이내
(일반·해외연계) 최대 7천만원, (고도화) 최대 2천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별도공고(기술보호올타리 공고 참조)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보호 올타리(<https://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중소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온라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62
- 관련 홈페이지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2. 기술지킴서비스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지원대상	'21년도 이전 신규 가입기업 졸업(종료)	'21년 신규 가입기업 졸업(예정)
지원내용	서비스 3년간 지원 * 통합보안장비 임대료 지원	서비스 3년간 지원 * 통합보안장비 임대료 지원 종료
신청접수	유선전화/이메일	유선전화/이메일/온라인통합지원시스템('25년 상반기 통합지원시스템 오픈 예정)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 ▶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 기술지킴서비스 졸업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 보안관제서비스를 무상 제공하여 24시간/365일 실시간 이상징후 모니터링, 보안사고 상황 전파 및 지원
 - * 통합보안장비(UTM, IPS 등) 및 웹 방화벽 보유가 필요하며, 해당 장비는 기업 부담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기업 내부자료 반출에 대한 탐지 및 차단, 이상징후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대응(기업당 PC용 라이선스 30 copy 제공)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기술유출 예방, 중앙집중적 모니터링·관리 및 이상징후 자동 대응(기업당 PC용 또는 서버용 라이선스 30 copy 제공)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공격에 의한 PC 내부자료의 암호화 방지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대응, 감염된 자료 복구(기업당 PC용 라이선스 30 copy 제공)
- 지원규모 : 1,176건 489개사('24년)
- 지원금액 : 1,927백만원('25년)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연중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내용 작성 후 인쇄 → 인감 날인 → 스캔 후 이메일 전송(monitor@kaits-info.or.kr)
 - * '25년 상반기 중, 온라인 중소기업 기술보호올타리 통합지원시스템 오픈 시, 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예정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중점 심사·평가 상세 지표 및 항목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776 (이메일) yis0321@korea.kr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전화) 02-3489-7052 (이메일) monitor@kaits-info.or.kr
- 기타 : 기술보호올타리(www.ultari.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4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경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알림소식 - 사업공고

3-1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수준 강화 및 기술분쟁에 따른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사업개요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관련 사업	전문가 현장자문, 기술보호지원반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내용	(현장자문) 기초·심화자문 최대 10일 지원 - 기초자문 :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제시(3일, 무료) - 심화자문 :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심화자문 지원(소요비용의 75%, 최대 7일) (기술보호지원반) 최대 2일 지원, 무료 -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진단 등 사전예방 컨설팅 - (사후구제)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피해 발생 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연계 등 초동 지원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최대 7일 지원, 무료 -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진단 등 사전예방 컨설팅 - (사후구제) 지역별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피해 발생 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 연계 등 초동 지원 - (스타트업)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올케어 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현장자문) 기술보호올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기술보호지원반) 이메일 접수	기술보호올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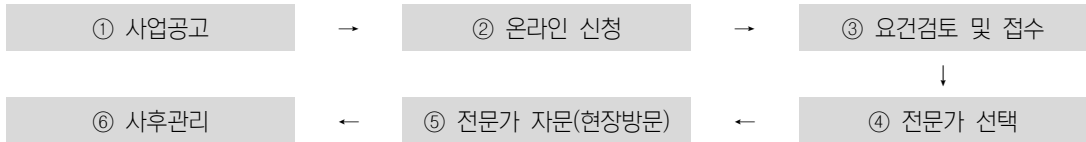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사전예방) 기술보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방문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진단 등 사전예방 컨설팅
 - (사후구제)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대응방향 설정, 지원사업 연계 등 초동 지원
 - (스타트업) 창업기업 대상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올케어 서비스 지원

신청·접수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687 (이메일) yun1218@korea.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전화) 02-368-8918 (이메일) support@win-win.or.kr
-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통합 기술보호지원반

Q&A

Q. 보안자문과 법률자문이 둘 다 필요한데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은 기업당 연 1회만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지원분야(사전예방, 사후구제, 스타트업) 및 희망 전문가(보안,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를 모두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자문 접수완료 후, 전문가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원하는 전문가를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접수완료 이후 희망하는 전문가를 직접 입력하거나 재단 시스템에서 추천한 전문가님들의 약력을 확인 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선택이 어려운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사업 담당자가 전문가를 배정해 드립니다.

2. 법무지원단

사업개요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법률 자문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국내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외국 자본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외국투자기업
- ▶ 휴·폐업기업 ▶ 기타 사업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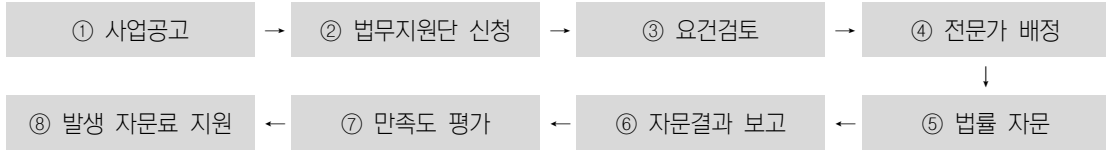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일반 자문
 - 기술유출·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제 컨설팅
- 지원시간 : 지원 세부내용에 따라 1개 기업당 1회에 걸쳐 최대 60시간 이내 법률지원(단, 사전예방의 경우 신청경로에 따라 최대 20시간 ~ 60시간 이내)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내 ‘법무지원단’을 통한 신청방법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필수 제출 및 사전예방의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1부 추가 제출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여부 결정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687 (이메일) yun1218@korea.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전화) 02-368-8706 (이메일) law@win-win.or.kr
-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법무지원단

Q&A
<p>Q.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이 원하는 특허법인 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관련 비용을 지불하고 기관에 영수증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비용을 보전받는 것인가요?</p> <p>A. 아니요. 법무지원단은 변호사와 변리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법무지원단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 가운데 1인을 지원기업에 배정하고 해당 전문가는 지원기업의 자문을 수행합니다. 자문수행 중 전문가는 기관에 자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자문 종료 후에는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기업은 기관에서 진행하는 만족도조사를 필히 참여하여야 하며, 정해진 사업의 절차에 따라 자문이 종료된 기업에 한하여 발생 자문료를 기관에서 지원합니다.</p> <p>Q. 지원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이 자문수행 중 이행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p> <p>A.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가운데 지원기업은 전문가의 자문일자, 자문시간, 자문내용 등 자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사항은 추후 전문가가 자문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업의 직인을 요청할 때 지원기업은 해당 보고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이 기재되어 불필요한 자문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족도조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p> <p>해당 사업은 국세로 운영되는 사업인만큼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p>

3.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 및 신속한 피해기업 구제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신청제외 대상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내용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 최대 55천원, 중재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
 - 조정 불성립 또는 중단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소송비용 지원(최대 2,000만원)
 - 조정 피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 단,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이며 조정이 최종 성립된 경우에 한함
-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유선상담 후 방문·우편·이메일·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로 신청(상시)
- 제출서류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등(www.ultari.go.kr에서 서식 제공)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6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화) 02-368-8768, 8769 (이메일) (solomon@win-win.or.kr)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Q&A

Q.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Q.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4. 디지털포렌식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기업소유의 업무용 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동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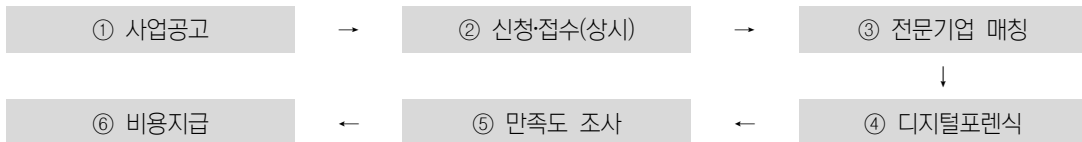
- ▶ 휴·폐업기업
- ▶ 포렌식을 요청하는 기기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기업
- ▶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업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탈취, 기술유출 피해가 있는 기업에 한하여 증거 수집, 분석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 소유 업무용 디지털기기의 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원규모 : 디지털기기 약 3대 이내로 포렌식
-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신청·접수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내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을 통한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의뢰물 소유권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여부 결정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783 (이메일) chs5163@korea.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전화) 02-368-8714 (이메일) forensic@win-win.or.kr
-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Q&A

Q. 디지털포렌식이란 무엇인가요?

A. PC나 핸드폰 등 디지털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분석·확보하여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기술침해 등 각종 범죄혐의의 결정적인 단서가 디지털 증거에서 발견되어 범죄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기기가 많아 사업에서 정하는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분석을 의뢰하는 기기가 지원기업의 소유여야 하며, 사업의 지원내용을 벗어나는 목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전제로 사업에서 최대 지원하는 금액은 5백만원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기술자료 임치

사업개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 입증

지원대상

- 타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내용

-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분쟁 등 문제 발생 시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수·위탁거래 시 사용인의 기술탈취·유용 방지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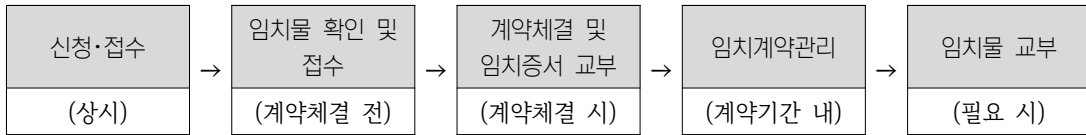
수수료

- 신규 30만원/년(최초 임치계약), 갱신 15만원/년
 - *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임치수수료 1/3 감면, 5년이상 장기임치시 임치수수료 1/2 감면
 -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혹은 거래 예정인 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신청·접수

- 온 라 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로 접속
-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직접 방문 (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충무로 소재)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3
- 기술자료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Q&A

Q.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무엇인가요?

A.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뭔가요?

A.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말간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12.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수요에 맞춰 바우처를 지원하고 보호역량이 성장하는 기업에 추가 지원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

1.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구. 선도기업 육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 3년간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해당 기업
-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매칭

수준별 점수 및 단계			추천 프로그램		
단계	점수	기술보호 단계	분야	필수패키지	매칭(안)
I 우수	75점 이상	선도기업(3단계)	약점보완	기술보호 현장컨설팅·교육(최대3회)+수 준진단+수준확인(추가가능)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보호시스템 구축·운영
II 양호	60점-75점 미만	유망기업(2단계)	보안강화		
III 보통	45점-60점 미만				
IV 취약	30점-45점 미만	초보기업(1단계)	인프라구축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정책보험, 손해액 산정
V 위험	30점 미만				

* 바우처 한도 : 초보기업 30백만원, 유망기업 50백만원, 선도기업 70백만원

신청·접수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www.ultari.go.kr ('25년 별도 공고 예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개인·기업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88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2.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휴·폐업기업
-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 ▶ 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등 특정된 등록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아이디어 등과 같은 사업의 지원과 무관한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보험목적물(특허, 실용신안, 기술임치, 디자인) 관련 피소상황에 대비하여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 시 일부 보험료 정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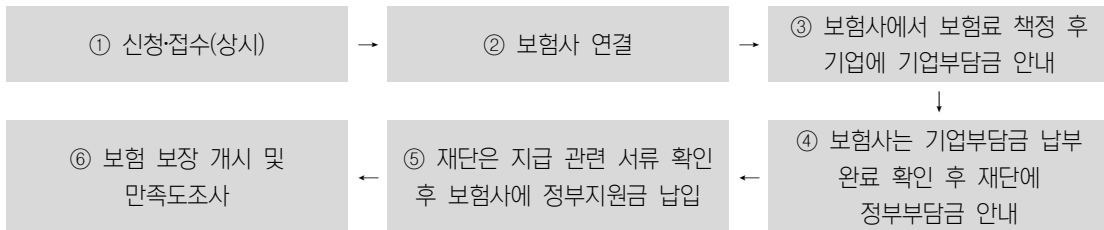
구분	피 소 대 응(기본)	소 제 기(특약, 선택)
내용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에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관련 비용 지원	• 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관련 비용 지원
보장기간	• 1년 또는 3년 중 선택	
보험효력	• 가입 즉시	• (1년)3개월 이후, (3년)6개월 이후
보상금액	•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중 선택 (해외 1억원)	
보험료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율 30%) * 산업별·매출별·보상금액별 상이	
보험료할증·할인	• 최근 5년간 기술분쟁 유경험 시 할증, 없는 경우 10% 할인 • 3년 계약 시 연 요율의 250% 적용	

- 지원금액 : 국내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해외 보험 시 80% 정부 지원
 - * 국내 보험의 경우, 5년 내 창업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 인증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 추가 지원
- 보장하지 않는 내용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벌금·과태료 등 보험가입자 불법에 기인한

손실과 같이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상불가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 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한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보험지원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매출액 증빙서류, 보험목적물 증빙서류, 보험료 추가지원 관련 서류 각 1부
- 선정평가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전화) 044-204-7782 (이메일) lgwlgw@korea.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전화) 02-368-8714 (이메일) insurance@win-win.or.kr
- 기타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참고사항

- 관련 홈페이지
- (경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Q&A
<p>Q. 보험사는 어느 곳인가요?</p> <p>A.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사업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개 보험사 모두 약관과 보장 내용이 같으며, 보험료 산정 시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되어 가입기업이 보험사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p> <p>Q.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약관과 보험료가 다른가요?</p> <p>A. 5개 보험사 모두 동일한 약관과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보험사 약관 확인과 간이 보험료 산출은 현대해상 (https://imet.kr/tp/)을 통하여 확인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불필요)</p>

3.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지원

사업개요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되는 경우
- ▶ 디자인, 상표 및 경영 정도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과 이해충돌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에서 손해액 산정이 불가한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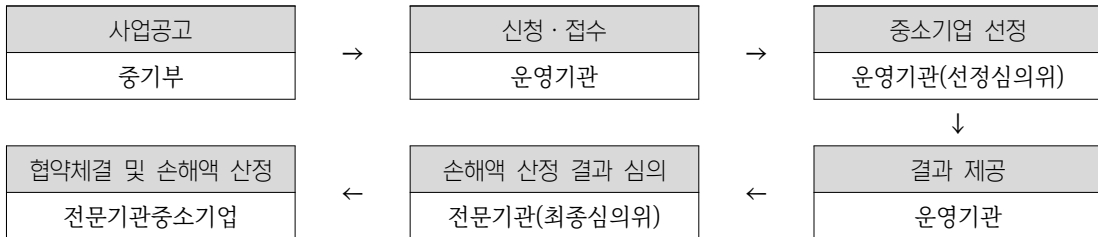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손해액 산정 비용의 최대 50-90% 지원 (부가세 별도 부담)
 - * 손해액 산정 수수료 기본 5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지원
 - ②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3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 cod@win-win.or.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법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우대증빙서류 각 1부
- 선정평가 : 법률·기술·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액 산정 지원단(5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편성하여 중소기업 선정심의 항목에 따라 적합성 판단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 044-204-7782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92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 02-2155-3772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경로) 기술보호울타리>정보마당>공지사항

4장 인력 양성

4-1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사업개요

특성화고생 대상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지원대상	사업 운영에 결격 사유가 없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 고등학교	변동없음
지원내용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현장실습비, 연수비 등 지원	변동없음
지원규모	특성화고 173개교	특성화고 180개교

지원예산	27,675백만원	변동없음
특화교육	신산업·신기술+스마트공장+지역특화산업(신규)	변동없음
신청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변동없음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양성과 취업연계가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특성화고 재학생 및 중소기업 참여)
- 지원조건 : 사업 운영에 결격 사유가 없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
- 우대사항 : 지역특화산업, 신산업·신기술, 스마트공장 관련 맞춤형 운영이 가능한 특성화고

신청제외 대상

- ▶ 대기업, 중견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중소기업(주점업 등 일부 업종 지원제외)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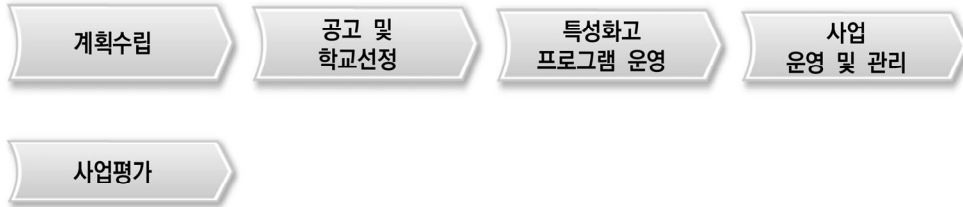
모듈	프로그램	주요내용
①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1. 맞춤형(취업/산학)	기업, 협단체와 채용협약 후 맞춤형 교육
	2. 1팀 1기업 프로젝트	기업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팀프로젝트
	3. 교수학습자료 개발	현장중심 교육 운영을 위한 학습자료 개발
② 취업역량강화 및 취업연계	1. 현장학습 프로그램	현장견학, 현장체험, 현장실습 활동
	2. 전공동아리 프로그램	취업중심 전공동아리 활동 지원
	3. 외부전문가 활용	산학협력교사 등 취업 관련 외부전문가 활용
③ 특성화마인드 제고	1. 진로지도 프로그램	취업마인드 제고 및 맞춤형 진로지도
	2. 중소기업 이해연수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진로선택폭 확대
	3. 교원 직무연수	교원 전문성 향상 및 특성화 마인드 제고

- 지원규모 : 특성화고 180개교
- 지원금액 : 한 학교당 평균 1.3억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1월 중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smes.go.kr/sanhakin>)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 : 성과평가(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특성화 목표 및 계획, 사업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육과정, 취업연계 역량 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4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22, 9862, 9863, 9865, 9867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참고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4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 (경로)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새소식) > 사업공고 > (검색) 특성화고

Q&A

-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기업 참여 방법은?
- A.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경로)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② [사업 신청] → [기업회원 로그인]
③ [신청 관리] → [사업참여기업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내 공지사항에 신청 매뉴얼 게시
- Q.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성화고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참여학교 현황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로)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속
② [사업 안내]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4-2.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기술사관 육성)

사업개요

직업계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직업계고-전문대-중소기업 연계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
 - (전문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문대
 - (직업계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제외 대상

- ▶ (대학) (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 등
-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일반유형주점업, 무도유형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 (학생) 직업계고 2~3학년 진학 시 선발하여 전문대까지 연계 교육을 받은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며, 산업기사 취득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대체 가능(협약기업이 병역지정업체인 경우)
- (중소기업) 사업단 운영 전문대와 협의하여 기술사관 프로그램(현장체험, CEO강의, 인력 채용 등)에 참여 가능,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 등

대 상	지 원 내 용
참여학생	• 직업교육,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연계대학 진학 등
협약기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 지원규모 : 19개 사업단 / 연간 참여기업 800개사 내외

신청·접수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사업단 중 양성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
- 신규 전문대(사업단) 모집 : 4월 공고 예정, 신청 희망 대학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학교(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사업추진전략,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생·교원 역량강화 등

- 추진절차 : 모집공고(신청접수) →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5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18, 9875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학교 현황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경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 ‘기술사관’

4-3.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개요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을 설치하고, 협약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참여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 지원조건(학생)
 - (재교육형 일반) 해당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기업에 취업해야 함
 -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할 경력이 없어야 함. 단, 졸업·수료일 기준 취업해야 함

신청제외 대상

- ▶ (대학) (전문)대학교협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 대학 등
-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일반유형주점업, 무도유형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 (학생) 최대 2년간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일반) : 전문학사·학사과정은 기준등록금의 85%, 석·박사 과정은 65%
 - 재교육형(동시채용), 채용조건형 : 기준등록금 100% 지원
- (대학)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00만원 이내 지원
- (기업) 근로자 역량 향상 지원 및 장기재직(졸업후 의무근무 1~2년)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지원규모 : 91개 학과 / 연간 참여기업 1,500개 내외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학생) 봄학기 11~2월, 가을학기 6~8월(학과별 학사일정 상이)
 - (대학) 4월
- 신청방법
 - (학생)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 신청서 제출
 - (대학)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에 학교(기관) 회원으로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선정평가
 - (학생) 원서접수 → 서류평가 → 면접평가(학과별 입학 공고 확인 필요)
 - (대학)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전문위원회)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학생) 학과 전공-업무 적합성, 학업 계획 등
 - (대학) 사업추진 전략,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생·교원 역량강화 등
- 추진절차
 - (학생) 모집공고(대학) → 서류접수·면접평가(대학) → 3자협약(대학-기업-학생)
 - (대학) 모집공고(신청접수) → 현장실태조사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협약체결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45
- 중소기업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18, 9875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참고사항

-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현황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경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 정보마당 > 참여학교 현황 > ‘계약학과’

4-4.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활용 지원사업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외국인 유학생 매칭에서 비자발급 지원에 이르는 유학생 취업 원스톱 지원체계 추진

1.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개요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교육 외국인 유학생(D-2) 1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인턴십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

신청제외 대상

- ▶ 외국인 유학생 모집제한 권고대학(학위과정),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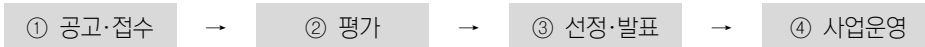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지원대상) 중소기업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학년 유학생(D-2) 및 구직 비자 보유 졸업생(D-10) 100명 이상으로 구성
 - ② (운영내용)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취업실전 대비 프로그램 포함, 총 200시간 이상

로 운영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월
- 선정절차 : 서류평가, 선정심의위원회, 현장검증(필요시)을 통해 최종 선정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5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24

2. K-수출전사 아카데미

사업개요

-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고 네트워크 등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중소벤처기업 수출전문인력으로 양성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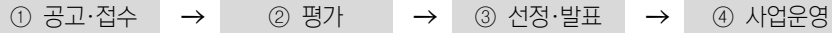
- 신청자격 :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 대상 수출직무 교육 인프라(교육과정·강사·강의장 등) 및 취업매칭 네트워크 확보 기관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 수출직무 희망 외국인 유학생 300명 대상으로, 학기 중 주말과 정과 방학과정으로 이원화하여 교육
 - ② (운영내용) 기업 수요를 반영한 「무역실무 이론 → 수출·마케팅 실습 → 취업코칭」의 취업맞춤반 교육으로 수출전문인력 양성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월
- 선정절차 : 서류평가, 선정심의위원회, 현장검증(필요시)을 통해 최종 선정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50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452

3. K-Work 플랫폼

사업개요

-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매칭 지원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졸업(예정) 외국인 유학생(D-2, D-10) 및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고, 중기부 고용추천 24개 직종에 해당하는 국내 중소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채용·인재 정보검색 기능을 중심으로 관심 기업 및 인재를 분류·관리하고, 구인·구직 선호 항목 기반의 AI 매칭 지원
 - ② 채용공고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계약 체결시 신속한 비자발급 지원을 위한 고용추천(E-7-1) 등 연계지원

신청·접수

- 홈페이지 : k-work.or.kr
- 추진절차(기업)



- 추진절차(외국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5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452

4. 비자추천(E-7-1, E-7-4)

사업개요

- (E-7-1 고용추천)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전문직종(24개)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해 E-7-1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추천 지원
- (E-7-4 전환추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E-7-4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추천 지원

지원대상

- E-7-1 신청자격 :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 외국인 유학생(D-2, D-10) 및 GNI 80% 이상 임금 지급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
 - * 단,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해당 시 GNI 70% 이상으로 완화
- E-7-4 신청자격 : 국내 4년 이상 체류한 K-Point E74 200점 이상 득점자 및 신청 외국인 산재 가입을 완료한 국내 제조업종 중소기업
 - * 단, 법무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① (E-7-1 고용추천) 고용추천 확정명단을 중기부에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통보
 - ② (E-7-4 전환추천) 전환추천 확정명단을 중기부에서 법무부에 통보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월 이후
 -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연중 상시모집
- 선정절차 : 중진공 서류검토(심의) 및 중기부 최종검증 후 선정
- 추진절차(E-7-1 고용추천)



- 추진절차(E-7-4 전환추천)

① 공고·접수



② 서류검토



③ 최종검증



④ 전환추천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450
-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 055-751-9879

4-5. 연수사업

사업개요

전국 6개 중소기업 전문연수원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및 임직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 * 전국 6개 연수원 : 중소기업부(안산), 호남(광주), 대구경북(경산), 부산경남(창원), 충청(천안), 강원(태백)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재직자, 구직자 등
- 지원조건 : 연수신청 연수생(기업)이 연수비 부담
 - * 고용보험 환급과정, 할인과정, 무료과정 일부 운영
- 우대사항 : 소기업, 정책연계 과정, 신규과정 등 연수비 할인

신청제외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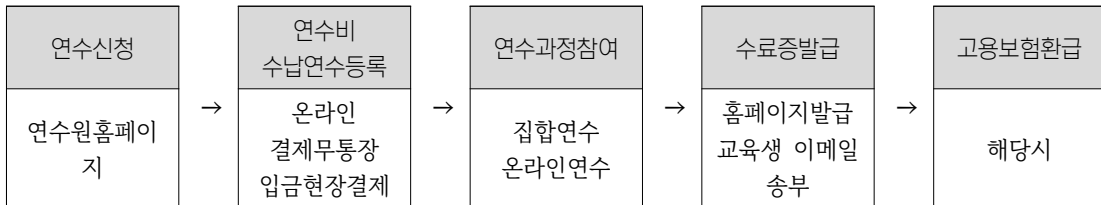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기술·경영분야 직무역량향상연수, 정책연수, 기업현장 맞춤형연수, 이러닝·마이크로러닝 등 연수운영
 - (직무역량향상연수) 디지털신산업, 뿌리·생산기술 연수 등
 - (정책연수) 정부정책 연계교육, 취업교육, 수출교육 등
 - (맞춤연수) 중소기업 니즈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 (온라인연수)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자기주도적 교육 프로그램
- 지원규모 : 연간 50,000명 내외
- 연수분야

연수분야			주요연수내용	
오프라인	직무역량 향상연수	기술연수	디지털신 산업	스마트제조, AI, 빅데이터,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로봇, 이차 전지, 기타 신산업 분야
			부리기술	주조·소성가공·용접, 표면처리·열처리·금형
			생산기술	기계설계·기계가공, 정밀측정·도면해독, 자동화·유공압, 플라 스틱·고무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생산관리, 현장혁신, 국제인증, 품질관리	
		경영	경영일반·직무, 창업, 산업안전, 자기개발, 기업가 정신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CEO 명품아카데미	
	맞춤연수	문제해결형	개별 기업의 교육니즈를 반영, 연수과정을 맞춤형으로 설계 하여 실시하는 연수	
		현장맞춤형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조직활성화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정책연수	중기지원정책연수, 취업연계연수, 협업·산학협력	
온라인	이러닝연수	스마트제조, 부리기술, 경영 등의 직무중심 이러닝연수		
	마이크로러닝	최신 트렌드 중심 마이크로러닝(7분내외 콘텐츠)		

신청·접수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시 신청
- (홈페이지) <http://ssup.kosmes.or.kr>
-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훈련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수비 할인대상 해당 시 증빙서류 별도 제출 필요
- 지원절차 : 연간 연수과정 일정에 따라 교육 신청 및 참여 가능



문의처

연수원 연락처

구 분	지 역	연 락 처	FAX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 안산	031-490-1472	031-490-1116
호남연수원	광주광역시	062-250-3000	062-250-3077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053-819-5001-2	0505-047-4423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055-548-8045-6	055-548-8080-1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041-559-9225	0505-047-4097
강원연수원	강원 태백	033-550-5000	033-550-5015
온라인연수	-	031-490-1288	031-490-1118

Q&A

Q. 고용보험환급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연수신청 시 훈련위탁계약서와 회사통장사본을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HRD-Net에 노동부 환급 계좌등록을 해주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Q. 연수원의 숙박비와 식비는 얼마인가요?

A. 숙박비와 식비는 정부지원을 받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숙박이 제공되나 출퇴근도 가능합니다.(연수등록 시 선택)

4-6.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제도

※ 중소기업부 소관 추천분야(공업(일부), 광업, 에너지)에 한함
(타 분야의 자격 및 선정요건 등은 병무청 및 해당 분야 추천권자(기관)에 문의 필요)

사업개요

국가산업 발전·육성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신청분야(중소벤처기업부) : 공업(일부)*, 광업, 에너지
 - * 중기부 추천분야 :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 * 타 기관 추천분야 : 의료의약(복지부), 농산물가공·동물의약품(농림부), 임산물가공 (산림청), 식음료

(식약처), 게임s/w·애니메이션·영상게임기(문체부), 수산물가공·해운·수산(해수부), 건설(국토부), 방위 산업(한국방산진흥회)

신청자격(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등록된 공장
-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마이스터고·특성화고 및 학생과 3차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신청자격(현역 임명대상자)

- ▶ 학사 이하 학위 보유자 중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면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예정)된 기간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
 - * 학력별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일학습병행자격 보유중인 자도 편입 허용
 - * 정보처리 분야 근무자는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필요

우대사항

- 국가중점정책분야(반도체, 저탄소, 소·부·장 등), 내일채움공제 및 성과공유제 가입 기업,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 참여 기업 등
- * 기타 우대사항 및 우대조건 등 세부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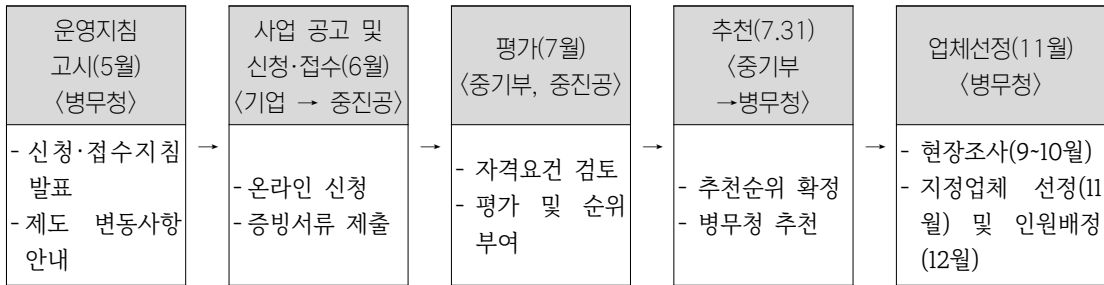
지원내용

- 세부내용 : 현역 34개월, 보충역 23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
- 지원규모('24년 기준)
 - (현역) 3,200명(업체별 배정인원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최종 결정)
 - (보충역) 별도 제한없음(업체 소요대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매년 6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 시스템(www.smes.go.kr/sanhakin/))
- 제출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 증명서 등
- 평가항목 : 고용증감, 일자리 질, 혁신형 기업, 산학협약 및 인재양성 등
 - * 기타 평가항목 및 접수부여 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 시스템 : www.smes.go.kr/sanhakin/
-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 산업기능요원 상담센터 : 1899-3001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025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

Q&A
Q. 병역지정업체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병역지정업체로 한 번 선정되면 선정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병역지정업체 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기존 병역지정업체라 하더라도 근무중(채용예정)인 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차년도 인원배정 신청(6월)**을 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이 해당 업체에 통보(12월)한 인원배정 범위 내에서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2년 이상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 ** 보충역은 예외(업체 소요대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보며, 추천권자에게 별도 신청 불요)
Q. 병역지정업체로 신규 선정된 해에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시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업체로 선정된 해에 병무청장이 해당 업체에 배정한 인원 범위 내에서 근무중(채용예정)인 입영대상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Q. 산업기능요원 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면 전문연구요원도 함께 편입할 수 있나요? A. 전문연구요원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연구요원 분야 병역지정업체로 별도 지정되어야 합니다.(전문연구요원 분야 병역지정업체 자격요건 및 평가지표 등은 산업기능요원 분야와 상이) 전문연구요원 분야 병역지정업체 신청 관련 문의는 병무청 혹은 해당분야 추천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산업기능요원 :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기간산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일정기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전문연구요원 :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정기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현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자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 혹은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 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등

5장 인력유입 촉진

5-1. 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합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가입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신청제외 대상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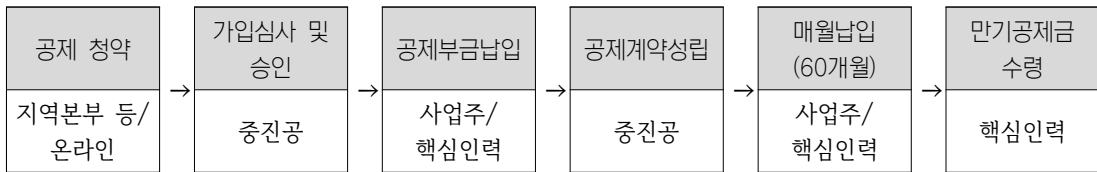
지원내용

- 가입 기간 : 3년 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 (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적립 금액 : 연간 400만원 이상 적립(3년 1,224만원, 5년 2000만원 이상)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제출서류 : 청약서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4~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5-2.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5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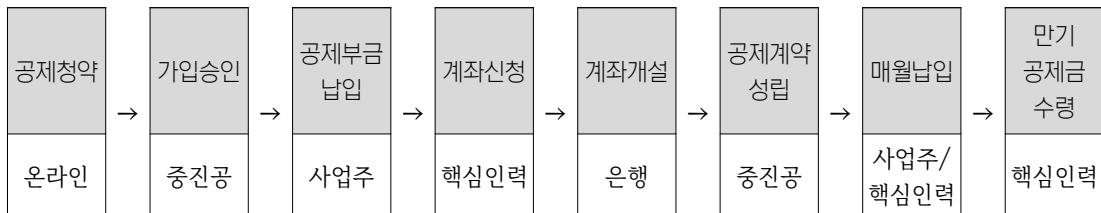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내용

- 가입 기간 : 5년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최대 4,000만원(매월 12만원~60만원, 이자포함)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0.2』의 비율로 납부
- 적립 금액 : 5년간 최대 4,000만원(이자포함)
- 공제 금리 : 기업납부금(변동금리 적용), 근로자납부금(최고 5%)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제출서류 : 청약서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56, 2982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내일채움공제 대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다른 점은?

A. 내일채움공제와 주요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다음과 같이 가입조건, 가입기간, 납입비율, 적용금리 등이 다름

구분		내일채움공제	우대 저축공제
가입조건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재직자	정규직 근로자	모든 근로자
가입기간		3년-10년	5년
납입비율		핵심인력:기업 = 1:2 이상	핵심인력:기업 = 1:0.2
적용금리		3.03%(‘24.4분기 기준)	최대 5%(기본금리* 3.0%+우대금리 2.0%)
월 적립금액 (기업+재직자)		월 34만-300만원	월 12만원-60만원

* '24.4분기 기준/ (IBK기업은행) 가입 후 3년 고정, 이후 2년간 변동
(하나은행) 가입 후 5년 고정

5-3.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한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자를 지원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중이며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학력, 연령 제한없음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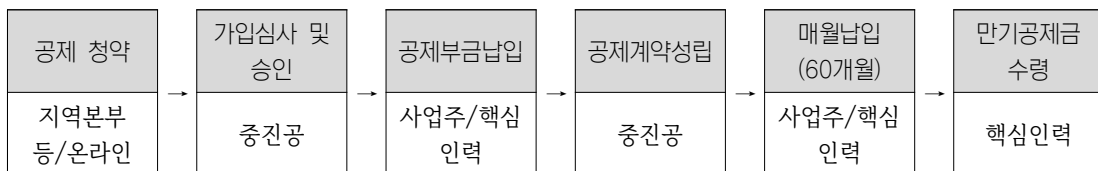
- ▶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내용

- 가입 기간 : 3년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3년간 1,008만원 공동 적립
 - (근로자)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기 업) 3년간 504만원 적립 (월 14만원 x 36개월)
- 적립 금액 : 3년간 1,008만원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신청·접수

- 공고 시기 : 상시모집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또는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제출서류 : 청약서
- 추진절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044-204-7791, 779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처 : 055-751-2974~5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Q&A

Q.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지만 가입가능한가요?

A. 네. 맞습니다. 해당 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만기 후 해당기업에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용어 설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등을 목적으로 중소(중견)기업과 청년근로자(신규채용자)가 2년간 공제금 적립 후 만기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5-4.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개요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지원대상	(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
지원내용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당해연도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함.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①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자, ②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

○ 우대사항 :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시 60% 이상 선정,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 50% 이상 선정,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사업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한 연구인력에 대해 신규과제 선정시 우선지원, 중소기업 R&D 우수성과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6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여성·장애인·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점 부여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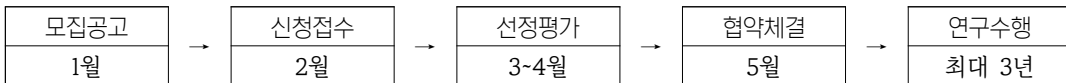
- ▶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 불가
-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3년, 기업의 지원인력에게 연봉의 50% 지원(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규모 : 신규 229명, 계속 325명
- 지원금액 : 총 12,462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자세한 사항은 '25년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연구개발과제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 지원의 효과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신진)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Q&A
<p>Q.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가요?</p> <p>A. 동시 수혜는 불가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과의 동시수혜는 가능합니다. 단,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대상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 지정기업,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에 한함)은 소부장(신진), 소부장(고경력) 각각 1명씩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p>

- Q.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Q. 선정되면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나요?
 A. 지원금은 1차년 단위로 일괄 지급되고, 신청 시 제출하신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대로 매달 정액을 기업 통장으로 이체 후 기업부담금과 합산하여 급여지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Q. 채용, 파견, 양성 모든 사업에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동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단, 사업 신청 단계에서 해당인력이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 및 타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인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Q. 사업에 참여한 후 중도 포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신청해도 될까요?
 A. 지원인력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 저희 사업에 중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5.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개요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지원대상	(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 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로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로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 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함.

-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서 공고일까지 채용을 완료한자,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자
- 우대사항 : 첨단기술분야(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시 60% 이상 선정,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50% 이상 선정,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6에 따라 지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여성·장애인·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점 부여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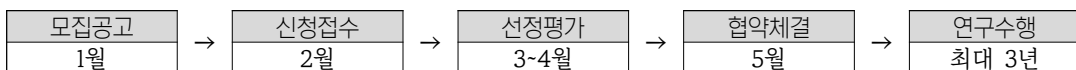
- ▶ 기 지원받은 인력은 신청 불가
- ▶ 타 정부지원 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최대 3년, 기업별 1명, 기준연봉의 50% 지원
- 지원규모 : 신규 109명, 계속 158명
- 지원금액 : 총 10,293백만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월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자세한 사항은 '25년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 지원의 효과성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인력정책과
(전화) 044-204-7443 (이메일) erica0309@korea.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이메일) enver@tipa.or.kr, ezsun@tipa.or.kr, hyun@tipa.or.kr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고경력)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Q&A

- Q.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가요?
- A. 동시 수혜는 불가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과의 동시 수혜는 가능합니다.
단,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대상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100 지정기업,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에 한함)은 소부장(신진), 소부장(고경력) 각각 1명씩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 Q.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 동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Q. 선정되면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나요?
- A. 지원금은 1차년 단위로 일괄 지급되고, 신청 시 제출하신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대로 매달 정액을 기업 통장으로 이체 후 기업부담금과 합산하여 급여지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Q. 저희 기업은 1월에 고경력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사업 참여자 선정이 5월에 이루어지는데, 이미 기업에 채용된 고경력 인력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단, 해당인력이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과 정부의 타 인건비 지원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5-6.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개요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 혁신역량 강화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하여 인정

-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R&D 우수성과 대 표기업 등 우대가점 부여

신청제외 대상

- ▶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단, 연장지원 협약종료 이후에도 전직인력 계속 고용 기업은 재신청 가능)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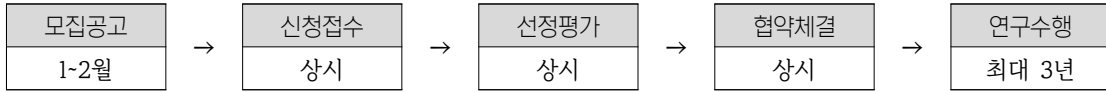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 (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기업은 온라인 신청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 선정평가 :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 서면평가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 지원의 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선정
 - 현장평가 :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선정
 -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①연구개발인력, ②연구장비·시설, ③보유기술, ④신청품목 관련 기술

(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공고
- (경로) SMTECH 종합관리시스템/정보마당/R&D 사업공고

Q&A
<p>Q.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연의 연구인력과 어떻게 매칭할 수 있나요?</p> <p>A.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수요서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제출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간 매칭이 진행됩니다. (지원수요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tech.go.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p> <p>※ 단, '24년 상반기부터 기업과 연구인력 간 매칭을 웹서비스로 제공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문의)</p>
<p>Q. 파견인력이 파견 중 공공연으로 중도 복귀하는 경우, 파견지원사업을 재신청할 수 있나요?</p> <p>A. 파견기업은 동사업에 참여(기업지원계약 체결)한 경우, 재참여가 불가합니다.</p>
<p>Q. 선정되면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나요?</p> <p>A. 지원금은 1차년 단위로 일괄 지급되고, 신청 시 제출하신 월별 급여 지급 계획서대로 매달 정액을 기업 통장으로 이체 후 기업부담금과 합산하여 급여지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p>

5-7.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R&D)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개요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전년대비 달라지는 내용 >

구분	'24년	'25년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졸업(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인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구직(예정)자, 내국인 및 외국인 중 국내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지원대상

- 4개 권역별(호서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전북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인력혁신센터(R&D Brain Care Center)
- (인력) 자연·공학·의약계열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예정)자 및 구직자
- (기업) 자연·공학·의약계열 연구인력 채용수요가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가 설치된 중소기업 구직자
- 우대사항 : 현장맞춤형 양성사업 Level3 참여기업 중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 대해 신진·고경력 채용 지원사업 참여시 선정 절차의 평가 단계 생략하고 바로 협약체결
* 기존 절차 : ① 신청·접수, ② 신청자격 검토, ③ 평가, ④ 협약, ⑤ 연구개발비 지급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 우수 예비연구자 양성 및 채용지원
 -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지원규모 : 4개 센터별 100명, 80개 기업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400만원
 - (Level2) 학위별 차등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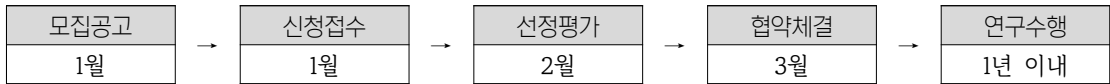
구분	지원금액	비고
학사 학위 취득자	1,300,000원/월	<기업부담금> 1) 월급여에서 인턴지원비를 제외한 금액 2) 4대보험료
석사 학위 취득자	1,600,000원/월	
박사 학위 취득자	1,900,000원/월	

- (Level3) R&D 프로젝트 지원비 : 10,000천원 ~ 12,000천원

신청·접수

- 공고(예정) 시기 : '25년 1월
- 신청방법 : 개별 연구인력혁신센터별 이메일 신청

- 제출서류 : 계획서, 증빙서류 등(자세한 사항은 '25년 공고문 참조)
- 선정평가 : 신청서류 서면평가
- 심사·평가 주요 내용 : 신청기업 평가, 기업 R&D 역량 평가, R&D 계획의 적정성 평가,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평가
- 추진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정책기획실
(전화) 044-300-0813, 044-300-0842, 044-300-0843
-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참고사항

- ① 전년도 사업공고 ※ 공고문을 통해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
- 공고명 : '24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공고

Q&A

- Q.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 하나요?
 A.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지역 및 산업의 연구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현장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및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Q. 연구인력혁신센터가 지원받는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기획연구, 예비신진 연구자 양성, 연구지원 활동) 운영 및 센터 관리·운영 비등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Q. 해당 연구인력혁신센터의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만 지원가능한가요?
 A. 해당 연구인력혁신센터의 졸업예정자 혹은 졸업자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Q. Level2를 수료하고, Level3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Level2 당시 신청한 연구인력혁신센터 대신 다른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Level3를 신청해도 될까요?
 A. 현재 양성사업은 Level2를 수료한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Level3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신청하셨던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8.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사업개요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 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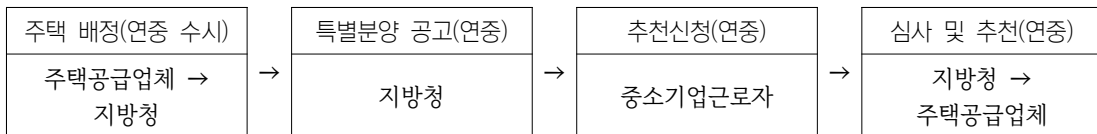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지원내용

-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분양 또는 임대)을 위한 추천(또는 확인)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에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근무경력 확인서류, 분야별 증빙서류 등
 - * 상세 내용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내 개별 공고문 확인
- 선정평가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배점 기준표에 따라 항목별 가·감점 평가 후 고득점순으로 추천(확인서의 경우, 자격 확인)
- 추진절차



문의처

-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신청 및 접수)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2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13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29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73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5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67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2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08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42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81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36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7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2		

참고사항

- 개별 모집공고는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에서 확인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안내

- 국세청 -

제1절 상호합의절차의 개관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납세자는 서면으로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²⁾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우선 해당 개시신청이 상호합의절차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그 결과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합니다. 체약상대국이 우리측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국은 협의절차에 착수하고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호합의 결과는 유사 쟁점사안의 선례가 되지 않으며,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과세사안에 대한 구속력도 없습니다.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신청

1. 대상조세

상호합의절차는 개별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로, 개별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조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는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자본 또는 자산에 부과되는 조세가 대상이므로 상호합의절차도 이 조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신청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 개별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³⁾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3. 신청 사유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3가지입니다.

- ① 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②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서 설정한 거래가격이 제3자간 적용되는 정상가격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⁴⁾, 그 과세조정에 따라 경제적 이중과세를 부담하게 된 납세자는 양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고지되지는 않았으나 향후에 고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는 확정처분 전이라 하더라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연성은 단순한 과세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과세예고통지 등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관련 세목과 세액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4. 권한 있는 당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국세청장)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 및 체약상대국의 국내법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의 신청사유에 따라,

- ①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 ②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권한 있는 당국이 됩니다.

이들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5. 개시제한 사유

납세자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해당 신청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합니다.⁵⁾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②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③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④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위의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국조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합의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혹은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지 않습니다.⁶⁾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⁷⁾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5항

6. 신청 기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은 과세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⁸⁾ 일반적으로 과세사실을 안 날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상호합의절차의 신청기간은 국내법상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다만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달리 규정된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개별 조세조약에서 신청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3년의 신청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권한 있는 당국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상담의 대상에는 대상조세 해당여부, 신청인 적격, 신청기간 기산일 및 종료일, 상호합의 대상금액의 확정, 대응조정 방식 등 상호합의절차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7.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⁹⁾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 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 ③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 ⑤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 ⑥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 ⑦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 ⑧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불복신청서 외의 서류에 한정)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
- ⑨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8. 사전상담

사전상담이란 실무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내용 등에 관해 납세자와 국세청 간 진행하는 회의입니다.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익명으로도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전상담을 통해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중과세사안을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9. 개시여부 검토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를 수령한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신청이 개시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¹⁰⁾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3항

10. 개시신청의 접수처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팀) 또는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에서 접수합니다.

주소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 국제조세제도과(국제조세협력팀)’, 국세청의 경우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담당관실’입니다.

제3절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및 종결

1. 개시

적법한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이 있고 법령상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계약상대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합니다. 반대로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우리 측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¹¹⁾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 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통보 받은 날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이 됩니다.¹²⁾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5조

2. 진행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회의를 개최하여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개별 조세조약은, 양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한 경우 반드시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여 이중과세 등을 해소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¹³⁾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다만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지연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¹⁴⁾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의 현재 진행중인 상호합의 사안에 대해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상호합의, APA 진행내역 조회

3. 종료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은 양 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진행하여 그 협의 결과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날을 말합니다.¹⁵⁾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그 외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일(다만, 계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그 신청 철회일,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를 직권으로 종료하는 경우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 종료를 통보받은 날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에 해당합니다.¹⁶⁾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4. 국내 소송절차와의 관계

상호합의절차는 국내법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¹⁷⁾ 상호합의절차 이외에 국내 구제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그 심사·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¹⁸⁾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 및 제46조 제3항 제1호

18) 국제기본법 제61조, 제68조, 제56조 제3항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심사·심판·행정소송의 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심사·심판청구의 결정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결일까지의 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상의 심사·심판청구의 청구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¹⁹⁾

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예를 들어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 후 소송제기기간인 90일이 만료되기 이전에 상호합의가 개시되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종결된 경우, 소송제기기간은 상호합의 개시일부터 종결일까지 진행되지 않고 정지되므로 남은 소송제기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적 권리구제수단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제66조), 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 1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은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청구된 건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²⁰⁾

2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동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 제1호

6.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이하 “고지유예 등”)를 할 수 있습니다.²¹⁾ 다만 고지유예 등은 상호주의에 따라 계약상대국이 고지유예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²²⁾

2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및 제3항

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10

고지유예나 분할고지의 결정이 있었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에 따른 세액을 고지합니다.²³⁾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의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 종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유예된 세액을 징수합니다.²⁴⁾

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고지유예 등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①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신청서²⁵⁾ ②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통보서 사본을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²⁶⁾ 고지유예 또는 분할고지를 신청 받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²⁷⁾

2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2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

27) 국세징수법 제18조

다만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고지유예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고지유예 등이 이미 허용된 경우라도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합니다.²⁸⁾

2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2항

- ①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② 신청인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²⁹⁾
- ③ 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 허용 이후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유예된 세액을 납부할 때는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³⁰⁾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납부지연가산세율³¹⁾이 적용되며 유예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³²⁾이 적용됩니다.

2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3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3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7. OECD 모델조세조약 상 중재제도 도입 여부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개별 조세조약은 OECD 모델조세조약 상의 강제중재제도 또는 이에 준하는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절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 결과의 시행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³³⁾

3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에 도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합의내용을 이행합니다.³⁴⁾

3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 ① 신청인이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 ② 상호합의절차와 불복쟁송(不服爭訟)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신청인이 상호합의 결과와 관련된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경우

신청인은 합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합의내용에 대한 수락여부와 관련 불복쟁송 취하여부를 서면³⁵⁾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기한까지 합의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³⁶⁾

3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3)

- 3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과세당국(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³⁷⁾
- 3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항
체약상대국이 과세한 사안의 경우에는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납세자가 그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³⁸⁾에 상호합의 종결통보서³⁹⁾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하여야 합니다.⁴⁰⁾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⁴¹⁾
- 3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3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1),(2)
4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2. 시행기한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상의 부과제척 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⁴²⁾

- 4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즉, 국세기본법 상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합의내용에 부합하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제5절 상호합의 통계 [2022년·2023년⁴³⁾ 기준]

43) OECD 홈페이지

□ 아래 통계는 OECD의 MAP 통계 관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국내 세법 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2022년·2023년 개시 및 처리현황

2022년에 상호합의는 44건이 개시되었고 6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2022년에 처리된 62건 중 2015년 이전 개시 건은 12건이며, 2016년 이후 개시된 상호합의는 50건입니다. 2022년 종결된 상호합의 중 이전가격 사안은 47건이며, 기타 사안은 15건입니다.

2022년 MAP 통계

(단위 : 건수)

구 분		기초	개시	종결	기말
2015년 이전 개시	이전가격	11	0	7	4
	기타	16	0	5	11
2016년 이후 개시	이전가격	122	34	40	116
	기타	47	10	10	47

2023년에 상호합의는 49건이 개시되었고 47건이 처리되었습니다. 2023년에 처리된 47건 중 2015년 이전 개시 건은 5건이며, 2016년 이후 개시된 상호합의는 42건입니다. 2023년 종결된 상호합의 중 이전가격 사안은 32건이며, 기타 사안은 15건입니다.

2023년 MAP 통계

(단위 : 건수)

구 분		기초	개시	종결	기말
2015년 이전 개시	이전가격	4	0	2	2
	기타	10*	0	3	7
2016년 이후 개시	이전가격	116	43	30	129
	기타	47	6	12	41

* OECD가 2022년 통계 집계·발표한 이후 상대국과의 협의로 분류 재조정해 직전 기말 재고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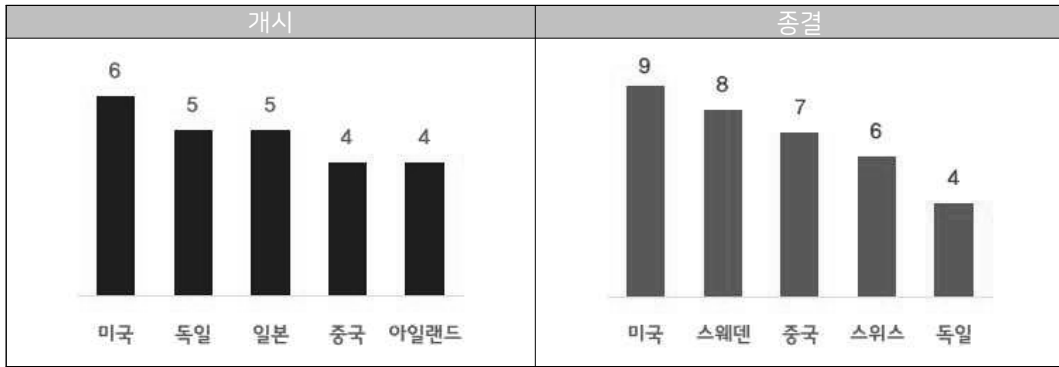
2. 처리기간

2022년에 종결된 상호합의 중 2015년 이전 개시된 사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7년 1개월이며, 2016년 이후 개시된 사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2년 8개월입니다. 2023년에 종결된 상호합의 중 2015년 이전 개시된 사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8년 4개월이며, 2016년 이후 개시된 사안의 평균 처리기간은 3년 3개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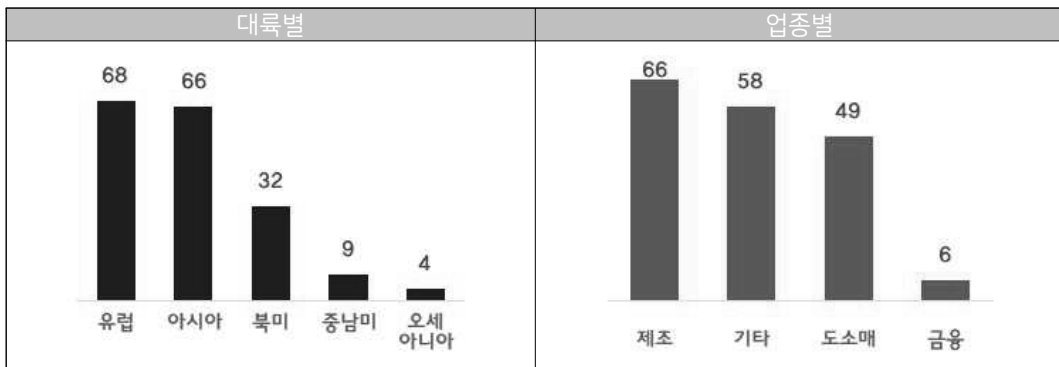
종결 시기	2015년 이전 개시	2016년 이후 개시
2022년	7년 1개월	2년 8개월
2023년	8년 4개월	3년 3개월

3. 국가별 상호합의 개시·종결 및 업종별 현황

2023년 중에 개시된 상호합의 사안은 미국, 독일, 일본 순으로, 종결된 상호합의 사안은 미국, 스웨덴, 중국 순으로 많습니다.



2023년 말 진행 중인 상호합의 사안은 대륙별로 유럽, 아시아, 북미 순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도소매업 순으로 많습니다.



4. 전세계 상호합의 통계 조회

OECD Inclusive Framework 가입국들의 연간 상호합의 통계를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6절 관련 서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 3. 22.>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신청인 인적 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소재국가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		⑥ 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복수 신청인 여부	[]여 []부	⑨ 복수 신청인 간 관계	[]모자관계 (지분율: %) []본점·지점 관계 []기타 (관계:)					
2. 대리인								
	⑩ 법인명(상호)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성명	⑬ 구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⑭ 관리번호	⑮ 전화번호 (사업장) (휴대전화)						
3. 관련 기업 인적 사항								
⑯ 법인명(상호)		⑰ 소재국가						
⑱ 대표자(성명)		⑲ 사업자등록번호						
⑳ 업종		㉑ 전화번호						
㉒ 소재지(주소)								
㉓ 신청인과의 관계	[]모자관계 (지분율: %) []기타 (관계:)	[]본점·지점 관계						
4. 상호합의 신청 내용								
㉔ 상호합의 신청사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							
㉕ 과세처분(예정) 사실을 안 날								
㉖ 관련 조세조약								
㉗ (예정)소득금액 또는 세액 변동내역	일련 번호	귀속연도	세목	소득금액	세액	[]납부		[]미납부
						납부세액	납부일	사유
	1							
	2							
합계								
㉘ 과세처분(예정)사실에 대한 납세자 의견 및 근거								
㉙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상호합의 신청(예정) 여부	[]여 []부	㉚ 체약상대국의 당국	전화번호 ()		㉛ 제출(예정)일			
		㉜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안내

(뒤쪽)

㉓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 신청(예정) 여부	[]여	㉔ 기관명	전화번호 ()		㉕ 제출(예정)일			
	[]부	㉕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㉗ 사전분쟁해결절차 경우 여부	사전답변제도		이전가격사전승인			기타 ()		
	경유]	진행]	미경유]	경유]	진행]	미경유]	경유]	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작성된 내용이 미비하거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요구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시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이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당국 간 분쟁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신청인 및 관련 기업의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관련 기업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 경정청구 거부 시 경정청구서 및 거부처분 통지 서류 등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계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 (불복신청서 외의 서류에 한정한다)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인별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 ㉔, ㉕ :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3. 관련 기업 인적 사항: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대상방 기업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 ㉖ :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통해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예정)이 있음을 안 날을 적습니다.
- ㉗ : 납세자가 한쪽 혹은 양쪽 과세당국에서 잘못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조세조약과 그 개별 조항을 적습니다.
- ㉘ :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 세목, 소득금액, 세액의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소득금액과 세액은 상호합의 신청대상금액에 대해서만 적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양수(+), 한국측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음수(-)로 표기합니다.
 - * 납부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며, 징수유예 등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부를 선택하고 그 사유를 적습니다.
- ㉙ : 상호합의 신청대상에 대한 납세자 의견을 말하며 별지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㉚ :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해 계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㉓란부터 ㉕란까지를 작성하며 제출된 상호합의 신청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 ㉛, ㉜ : 전자우편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처리합니다.
- ㉝ : 납세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에는 '여'를 선택하고 ㉓란부터 ㉕란까지를 작성하며 권리구제절차 신청서와 결정서의 사본 및 권리구제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을 제출합니다.
- ㉞ : "경유"와 "진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사전분쟁조정절차 관련 자료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국세 [] 지방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⑦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내용 구분

[] 납부고지의 유예 [] 납부기한등의 연장 [] 압류·매각의 유예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신청금액			
⑧ 세목	⑨ 연도/기분	⑩ 납부기한 (독촉기한)	⑪ 본세	⑫ 가산금	⑬ 계	⑭ 본세	⑮ 가산금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⑯ 횟수	⑰ 세목	⑱ 연도/기분	⑲ 분납기한	⑳ 세액	㉑ 이자 상당 가산액

외국의 상호합의 신청인

상호 합의 개시 내용	㉒ 계약상대국	㉓ 법인명(상호)
	㉔ 특례 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모자관계(지분율 %) [<input type="checkbox"/>] 본점·지점 관계 [<input type="checkbox"/>] 기타(관계:)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	
	㉕ 직위	㉖ 성명

㉗ 특례 신청기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년 월 일)부터 종료일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	-----	-----------------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⑦ 법인명(상호)	⑧ 소재 국가
	⑨ 대표자(성명)	⑩ 업종
	⑪ 소재지(주소)	
	⑫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점·지점 관계 [] 기타(관계:)

⑬ 상호합의 종결일		⑭ 결과 통지서 수령일				
신청인의 소득금액 조정명세	사업연도					계
	조정항목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사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 사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1)]

체약상대국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I) [한국 처분용]
-------	--

상호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⑥ 법인명(상호)
	⑦ 대표자(성명)
	⑧ 업종
	⑨ 소재지(주소)
	⑩ 신청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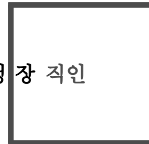
처리일	⑪ 상호합의 개시일
	⑫ 상호합의 종결일

⑬ 상호합의 요청 내용
⑭ 상호합의 종결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증질지 80g/m²]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2)]

체약상대국	<h2 style="margin: 0;">상호합의 종결 통보서(II)</h2> <h3 style="margin: 0;">[외국 처분용]</h3>
-------	--

상호합의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⑥ 법인명(상호)	
	⑦ 대표자(성명)	
	⑧ 업종	
	⑨ 소재지(주소)	
	⑩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 본점·지점 관계 [] 기타(관계:)

처리일	⑪ 상호합의 개시일
	⑫ 상호합의 종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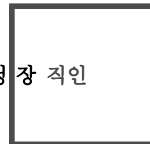
⑬ 상호합의 요청 내용

⑭ 상호합의 종결 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3)]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여부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1. 신청인 인적 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소재 국가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업종		⑥ 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 복수 신청인 여부	[]여 []부	⑨ 복수 신청인 간 관계	[]모자관계 (지분율: %) []본점·지점 관계 []기타 (관계:)

2. 상호합의 종결 통보 내용	
⑩ 상호합의 종결 통보 문서번호	
⑪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수령일	

3. 관련 불복쟁송 진행 상황: []여(사건번호:), []부

4. 상호합의 결과 수락 여부

- 1. 본인은 해당 상호합의 결과에 []동의함(향후 관련 불복쟁송 제기 없음), []동의하지 않음
- 2. 본인은 해당 상호합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한 불복쟁송을 []취하하였음, []계속 진행할 예정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제출하고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불복쟁송을 취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의 여부 및 관련 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 사본 2. 불복쟁송 취하서 사본(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1.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신청인별로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 2. ④사업자등록번호란: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소재지국의 납세자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 국세청 -

제1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의의

1.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소법§1의2①).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등의 공부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 주소와 거소의 개념

세법상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또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소령§2①, ②)

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소령§2③).

-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

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거주기간의 계산(소령§4)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합니다.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소규칙§2①, ②) |

입국 사유	입증 방법
단기 관광	•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치료	• 「의료법」§17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병역 이행	•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8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기 타	• 친족 경조사 등 비사업·비업무 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령§2④).

마. 외항선박·항공기 승무원의 주소의 판정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이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소령§2⑤).

바.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소령§3).

사.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봅니다(소통칙 1-0...3).

- ①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 국민 예외
- ② 한·미행정협정(SOFA)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 예외

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소령§2의2)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의 시기로 합니다.
 -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2. 영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의 시기로 합니다.
 -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 2.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및 납세의무(소법§2)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법§2③).

- 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 ②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

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법§2③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법§2④).

- ①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 ②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가지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소득세법」 제1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는 1비거주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법§2⑤).

2. 외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고 하고,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외국법인이라고 합니다(법법§2.1.3 호, 법령§2②).

- ①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 ②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 ③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상기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 외국단체로 분류하며,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령§2④).

그러나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기능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를 말하며, 주사무소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상 본거지를 말합니다.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말하며 그 외의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입니다(법법§2.3·4호).

3.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가. 거주자 개념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세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주자는 무제한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제한납세의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어떤 인이 특정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거주지국을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①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인적범위의 결정
- ② 이중거주자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전 세계 소득)의 해결
- ③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의 동시과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한 체약국 내 발생소득)의 해결

나. 이중거주자 발생 이유

하나의 인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거주자 정의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이 양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쪽 체약국이 서로 다른 내·외국법인 구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이 이중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중거주자인 법인

내·외국법인 판단시 본점소재지주의를 채택하는 A국과 실질관리지주의를 채택하는 B국이 있는 경우, 공부상 본점은 A국에 있으나 실질관리를 B국에 두고 있는 법인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에는 일반적으로 본점소재지주의와 실질관리지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본점소재지주의와 실질관리지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등은 본점소재지나 등기 등과 같은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여 내·외국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사업이 실제로 관리·지배되고 있는 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를 기준으로 하여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실질관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관리지는 전반적으로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실질관리지는 통상적으로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일치하나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조약목적상 법인의 거주를 판단하기 위한 판정요소(MTCS4 주석서 24.1)로는

- ① 이사회나 이와 동일한 조직의 모임이 통상적으로 개최되는 장소,

- ② 최고경영자 및 기타 임원이 통상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③ 법인 고위직의 일상적 경영활동(day to day management)이 수행되는 장소,
- ④ 법인본사가 소재하는 장소, 법인의 법적자격을 규율하는 국가,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 ⑤ 조약목적상 법인이 한 계약국 거주자이고 상대방 계약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조약규정의 부적절한 이용(an improper use)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다.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기준

조세조약은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하나의 인이 양쪽 계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그의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Tie Breaker Rule).

1) 이중거주자인 개인(MTC§4②)

-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 ④ 국민(national)
-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2) 이중거주자인 법인(MTCS4③)

개인 이외의 법인(persons)이 양 계약국 거주자가 되는 경우, 계약국의 관할당국은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되거나 등기된 장소 및 기타 관련요소들을 고려하여 상호합의를 통해 해당 법인이 조약목적상 어느 계약국 거주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해당 법인은 조약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경감이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계약국들의 관할당국이 다른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내용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1. 비거주자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 소통칙 3-0...1)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3①). 여기서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5).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소법§3②). 예컨대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소법§119.7호) 비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소통칙3-0...4).

구 분	내 용	과세소득
거주자	•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소득 전부- 국내·외 원천소득
	• 외국인 거주자로서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국내 주소가 있었던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	• 국내 원천소득 • 국외 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지불 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비거주자	• 거주자외 개인	• 국내원천소득

가. 납세의무의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둬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소통칙 3-0...2).

나.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같은 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같은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소통칙3-0...3).

예금가입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예금가입기간 중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예금가입자에게 국내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 이후부터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국기준 119-0...1).

2. 외국법인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및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법법§3, §4).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 내국법인은 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법§4④).

또한,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에서도 「법인세법」제4조제3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법§4⑤).

제2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비교 ┆

법 인 유 형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과세	과 세 함	과 세 함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과세		과세하지 아니함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		과세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		과세하지 아니함

한편, 비영리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법§4③,④,⑤, 법령§3).

-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 ②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 ③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 ⑥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 ⑦ 위 ①-⑥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은 제외

제3장 과세대상소득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소득의 종류를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에 열거·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둘째,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19조제5호, 제6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5호, 제6호의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과세범위 차이에 따른 국내 과세여부 |

국내세법	조세조약	국내 과세여부
과세대상	과세대상 아님	과세안함
과세대상 아님	과세대상	과세안함
과세대상	과세대상	과세함

셋째,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그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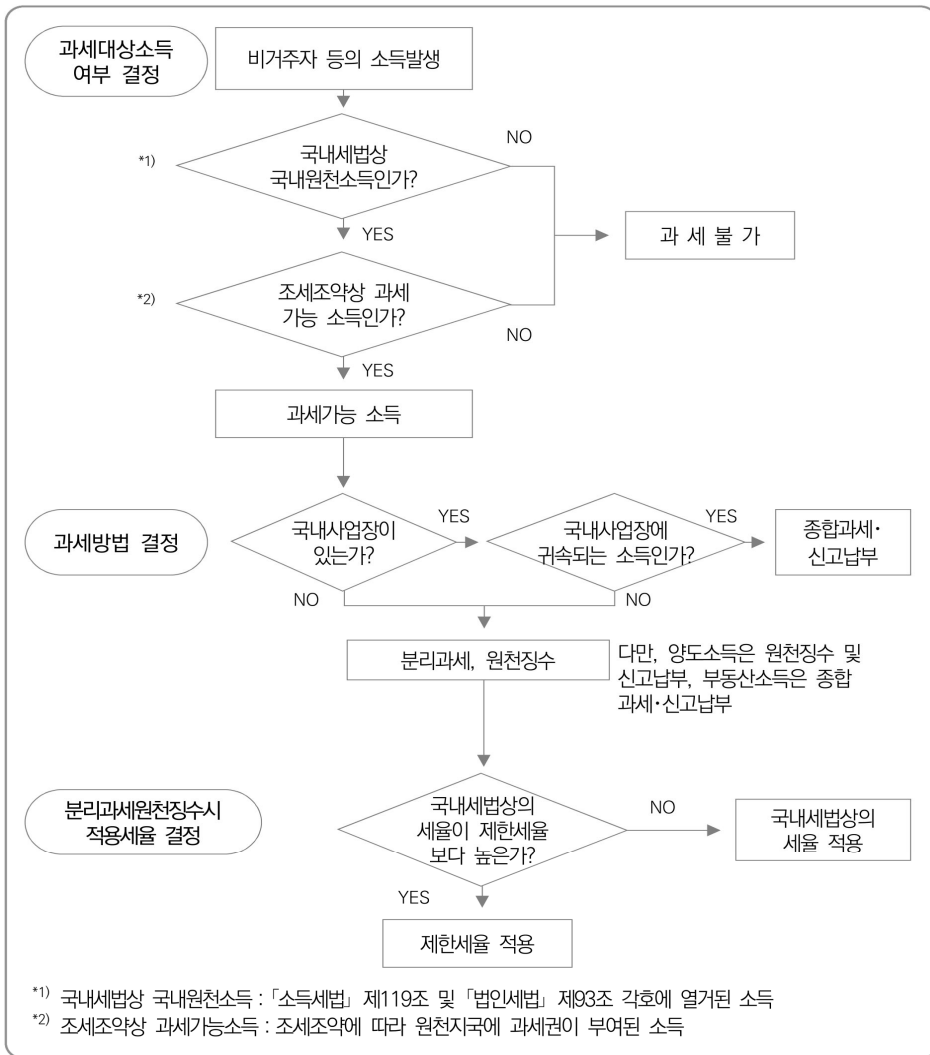
|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소득세법」제119조	「법인세법」제93조
국내원천 이자소득	1호	1호
국내원천 배당소득	2호	2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3호	3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4호	4호
국내원천 사업소득	5호	5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6호	6호
국내원천 근로소득	7호	-

국내원천 퇴직소득	8호	-
국내원천 연금소득	8호의2	-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9호	7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10호	8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11호	9호
국내원천 기타소득	12호	10호

※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 귀속자의 성격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이 없음

제4장 과세방법



1. 비거주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법§121①).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합니다(소법§127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소득·부동산등 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그 이외의 모든 국내원천소득은 종합하여 과세합니다(소법§121②).

그러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소법§121④, 소법§156①).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제7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취급합니다(소법§122, §124, §125).

국내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소법§156⑦).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를 준용합니다(소법§121⑥).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퇴직소득, 토지·건물등의 양도소득 제외)하여 과세합니다(소법§121③).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동일하며(다만,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게는 별도로 예납적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그 외

의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상)
1호	이 자 소 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국내사업장 미등록시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4호	선박등임대소득			2%
5호	사 업 소 득			2%
10호	사 용 료 소 득			20%
11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2호	기 타 소 득			20%(15%)
7호	근 로 소 득			거주자와 동일
8호의2	연 금 소 득			거주자와 동일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종합소득 확정신고 가능)
3호	부동산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9호	부동산등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8호	퇴 직 소 득	거주자와 동일(분류과세)		거주자와 동일

-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9호는 제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소법§121 ④)
- 3.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 4.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예외 : 「소득세법」 제156조의4·5(원천징수절차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 5.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의 제공 대가는(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포함)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 6.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부동산등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7.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대신 종합소득 확정신고(「소득세법」제119조제1호~제7호, 제10호~제12호 합산) 가능(소법§121⑤)

2.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라고 함)은 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법법§91, §97, §98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내국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신고·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예납적 원천징수, 법법§73, §97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외국법인의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 및 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는 「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제6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예납적 원천징수, 법법§97① 단서, §98⑧).

조세조약상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 등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투자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그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계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투자소득 관련 조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① 그 자산 또는 권리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사업활동에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 ② 동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그 자산 또는 권리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실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소가 되었는지 여부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부동산소득은 제외)은 각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됩니다(법법\$91②).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법법\$97①, \$98).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법인세법상)
1호	이 자 소 득	법 인 세 신고·납부(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채권이자:14%)
2호	배 당 소 득			20%
4호	선 박 등 임 대 소 득			2%
5호	사 업 소 득			2%
8호	사 용 료 소 득			20%
9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0호	기 타 소 득		20%(15%)	
6호	인 적 용 역 소 득		분리과세 (신고·납부 가능)	20%(3%)
7호	부 동 산 등 양 도 소 득		법인세 신고·납부 (다만,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호	부 동 산 소 득		법인세 신고·납부	-

- ※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예납적 원천징수)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3.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함(예외 : 「법인세법」제98조의5(원천징수절차 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 4.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부동산등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다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5.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도 가능함

3.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권의 제한(면세 등의 혜택)

조세조약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는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소득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료의 경우 국내세법에서는 사용료의 대상인 자산·권리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게 되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상으로는 그 사용료를 국내 거주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나.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조세조약이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거주지국에만 부여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경우

조세조약은 일정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일정세율(보통 5~15%)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것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합니다.

국내세법의 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낮은 때에는 국내세법상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국내세법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은 때에는 그 제한세율까지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소법§156의8①, 법법§98의7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조약채약국별 제한세율은 부록 “조세조약 채약국별 적용 대

상조세 및 제한세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조세조약에 의한 면세 등의 혜택 제한(Limitation on Benefits)

일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조세조약상의 원천지국 면세 또는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동 면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5. 가산세

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50(다음 ①항의 금액과 ②항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 각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기법§47의5①).

-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times 3/100$
-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times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고지일부부터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times 22/100,000^*$

* 2022.2.15.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 전 기간에 대한 부과 분은 종전규정 적용(국기령§27의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기법§47의5③).

- ①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 ②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 ③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나.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가산세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만, 고의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1억원 또는 5천만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기법§49①).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또는 「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소법§81의11)

①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소령§147의7①).

①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②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령§147의7②).

①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

액

② 상기 ①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또는 「소득세법」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법법\$75의7)

①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다만,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나.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법령\$120⑨).

①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②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

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령§120⑩).

- ①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 ② 상기①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제5장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의 의미

가. 고정사업장의 개념

국내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합니다.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상의 permanent establishment를 번역한 말로서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라고 하고 국내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고 합니다(법법§94, 소법§120).

나. 고정사업장의 중요성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 유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예외없이 “한쪽채약국의 기업이 다른쪽 채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다른쪽 채약국에서 발생한 그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다른쪽 채약국은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인 비거주자·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2) 제한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의 경우 조세조약상 이자, 배당,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법통칙

93-132...18).

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결정

비거주자·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외국기업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및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기업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양도소득은 개인 양수자의 경우 원천징수면제)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고정사업장의 유형

고정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일반 고정사업장과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고정사업장

비거주자·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이에는 지점, 사무소, 판매장소 등과 같은 형태의 고정사업장과 건설공사현장인 고정사업장(조세조약상 일정기간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됨)이 있습니다(법법§94①, 소법§120①).

2) 간주 고정사업장

비거주자·외국기업이 pD @P%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법법§94③, 법령§133, 소법§120③, 소령§180).

2. 일반 고정사업장

가. 고정사업장의 요건

고정사업장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라고 정의됩니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비거주자·외국기업의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등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고정사업장이 되며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MTCS5 주석서 6).

1) 사업장소가 존재할 것(The existence of a place of business, 장소적 개념)

사업장소라 함은 배타적으로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과 상관없이 기업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을 말합니다.

사업장소는 사업수행을 위한 건물이 없거나 사업수행에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존재(숙소, 호텔 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한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면 사업장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그 건물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한 그 건물 등이 당해기업의 소유인지, 임차한 것인지는 불문합니다.

2) 사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을 것(The place of business must be fixed, 기간적개념)

사업장소의 고정이란 사업장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특정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성격상 옮겨 다니며 활동하는 장소 중 특정장소가 사업에 비추어 상업적·지리적으로 전체적 관련성(a coherent whole commercially and geographically with respect to that business)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단일 사업장(a single place of business)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이 수행될 것(The carrying on of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through the fixed place of business, 기능적 개념)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하여는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활동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활동이 반드시 생산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사업활동이 그 기업의 사업상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활동이 사업상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으며 기업활동 전반적으로 볼 때 핵심적이고 중요한 활동부분(an essential and significant part of the activity of the enterprise as a whole)이 아닌 경우입니다.

나. 고정사업장이 되는 장소의 예시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은 이러한 고정사업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법법§94②, 소법§120②,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조항).

- ①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②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 ③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 ④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⑤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⑥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 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조세조약상 건설공사, 설치공사 또는 조립공사의 현장과 그 공사의 지휘, 감독 또는 기술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일정한 기간(6월, 9월 또는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이 있습니다.

다.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의 예시

외국기업이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사업활동이 당해 외국기업의 사업상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이하 “특정 활동 장소”)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법§94④, 소법§120④).

- ①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② 비거주자·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③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④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특정 활동 장소

「법인세법」제9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법법§94⑤).

- ①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 이하 “특수관계가 있는 자”)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법령§131②)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 ②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특정 활동 장소

「소득세법」제12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됩니다(소법§120⑤).

- ① 비거주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소령§183의2②)

1.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②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비거주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간주 고정사업장

가. 종속대리인

1) 종속대리인의 의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 일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법법§94③, 소법§120③)

-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위하여 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이는 국내에 정상적으로 지점을 개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원천지국에 제세를 신고하는 경우와는 달리 지점 대신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실상 지점을 둔 경우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면서 원천지국에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종속대리인의 유형(소령§180, 법령§133①)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재고 보유대리인)

-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비거주자·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계약체결대리인)

-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위 외국법인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해당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합니다(법령§133②).

3) 종속대리인의 요건

종속대리인의 요건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계약체결대리인의 요건

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통칙 94-133...2).

가)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나) 대리인이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할 것

“반복적 행사”라 함은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 독립대리인이 아닐 것

조세조약상 외국기업이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내세법상 “외국기업의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기업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4) 종속대리인의 예시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외국법인이 한국내의 구매자들에게 기계를 판매함에 있어, 국내의 종속대리인이 구매자들을 상대로 판매촉진(Sales promotion), 가격협의 및 조정, 기타 계약성사를 위한 실무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거래에 관련된 제반서류나 거래외관은 외국법인의 명의로 하는 경우, 이는 종속대리인의 국내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외국법인은 국내에 기계를 판매하는 판매업지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종속대리인의 활동인 판매촉진서비스업 지점이 아님에 유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기계를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기계를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하여 그 판매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당해 외국법인은 국내에 판매업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다른 법인과 동일한 세부담을 원천지국에서 지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의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납세의무와는 무관한 것이며 다만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는 대리인 자신의 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 독립대리인

1) 독립대리인의 의의

조세조약상 외국기업이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이 중개인, 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고, 또한 그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대리인을 독립대리인이라 합니다.

2) 독립대리인의 요건

대리인이 독립대리인이 되기위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법통칙 94-133...3).

가) 대리인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을 것

대리인이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당해 외국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인지 여부는 대리인이 당해 외국기업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그리고 대리하는 외국기업의 수 등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나)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한 활동을 할 것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①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상의 위험 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③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고정시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과세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되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정시설(fixed base)의 유무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의사의 진료실,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의 사무실 등이 고정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국내세법상으로는 고정사업장과 고정시설을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조약상의 고정시설도 국내세법상으로는 국내사업장에 포함 됩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고용노동부 -

I.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노동현장 법치 확립,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기반 조성
 - 최저 근로손실일수, 대다수 노조가 회계공시에 참여('24년 90.9%)
 - * 이번 정부 104만일 /盧 324만일, 李 177만일, 朴 171만일, 文 176만일
 - 대규모 파업 대신 대화·타협으로 노사 갈등 조기 해결
 - * 보건·의료 파업 조기 해소, 노사분규건수 감소('23년 223건 → '24년 131건)

- 양호한 고용지표,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
 - '24.11월 기준 고용률 69.9%(15~64세), 실업률 2.2%로 역대 가장 양호
 - 전폭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으로 출산·육아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
 - * [정부 저출생 대책 발표('24.6월) 전후 인식 변화]
 - ▲ 무자녀 부모 출산 의향 ('24.3월) 32.6% → ('24.9월) 37.7% (+5.1%p)
 - ▲ 자녀 필요성 ('24.3월) 61.1% → ('24.9월) 68.2% (+7.1%p)

- 사고사망자 감소, 현장의 안전인식 변화
 - 사고사망자 443명('24.3분기, △16명),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23년) 진입
 - * ('22.3분기) 510명 → ('23.3분기) 459명(△51명) → ('24.3분기) 443명(△16명)

- 기업의 안전관련 투자 증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한 인식 전환
 - * 전년 대비 안전관련 예산 확대(38.8%) 또는 유지(56.9%) <경총, '23년>

2. 개선 필요사항

- 노동약자 지원,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한 근본적 법·제도 개선
- '쉬었음' 청년, 폐업 소상공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
- 안전한 일터 조성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의 현장성, 실효성 제고

II.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1. 추진 여건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노동시장 불안요인 증가
 - 대외 수출 여건 악화, 더딘 내수 회복 등으로 기업의 일자리창출 여력 감소 → 1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 가능성
 - * [24.4분기~'25.1분기 채용계획] 527천명, 전년동기대비 33천명(5.9%) 감소
 - 고용 조정 우려, 임금체계 논란 등으로 노사관계 불확실성 증가 예상
 - * [25년 노사관계 전망] 불안 69.3%, '24년과 비슷 28.0%, 안정 2.9% <경총>
- 노동인구 고령화,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
 -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진입 → 경제활동인구 감소·고령화 심화
 - AI·디지털,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 본격화(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석유화학산업 재편) → 부문간 노동이동, 중소기업 구인난 병존
- 취업취약계층 체감 일자리 어려움 심화
 - (청년) 첫 구직기간 증가('24년 11.5개월, +1.1개월), 눈높이 맞는 일자리 부족
 - * 쉬었음 사유('24.8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2.5%), 다음 일 준비를 위해(23.9%)
 - 비대면에 익숙한 코로나 학번(20·21학번) 구직활동 어려움 예상
 - (중장년)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본격적 은퇴 시작
 - * 954만명(전체 인구 중 18.6%), 이 중 '25년 말 기준으로 164만명 은퇴 예상

- 이·전직 준비 부족, 주된 일자리 이탈로 인한 노후소득 불안
- (여성) 육아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활용에 한계
- (노동약자) 現법·제도로 보호·지원 어려운 노동약자 증가
 - * [’22년] 플랫폼 종사자 80만명, 특고 56만명 등 → [’23년] 88만명 / 55만명 등

Ⅲ. 2025년 핵심 추진과제

Ⅱ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속한 취업지원

- (채용행사)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우수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25.3월), 청년층 취업분위기 조성·확산
 - *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등 100여 개 기업 참여 예정
 - 지역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위한 권역·지역별 채용행사 추진(매월)
- (직접일자리) 부처 협업, 조기·통합공고를 통해 1분기 내 110만명(전체 채용인원 123.9만명의 약 90%) 이상 신속 채용
 - * 복지부, 문체부, 산림청, 환경부, 여가부 등 10개 부처 21개 사업(총 3.68조원)
- (폐업자영업·건설일용) 취업 희망 소상공인 발굴(중기부) 후 고용센터로 연계, 특화 취업지원서비스 본격 제공(’25.1월-, 2천명)
 -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대상 취업지원센터 확대(2개→7개), 훈련비지원한도 상향(내일배움카드제 400만원→500만원)

□ 근로자 생계안정 집중 관리

- (임금체불)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선하여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감독·강제수사 확대
 - * 사업주 용자금리 인하, 한도 확대 등 검토
 - 집중 지도기간(1월) 운영, 간이대지급금 확대(5,293억원, +546억원) 및 처리기간 단축(14일→7일, 연중)
 - 상습체불근절법(시행 ’25.10.23.) 하위법령 정비, ‘임금체불=중대범죄’ 인식 확산 및 임금체불 사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 * 상습체불사업주 신용제재 · 정부지원제한 · 공공입찰 불이익 등
- (생활안정) 취약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확대
 - * [저소득(용자)]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 지원
[산재 근로자] 한도상향(2→3천만원, 한시), 금리인하(1.25→1%, 한시), 양육비 지원 신설

□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 선제적 대비

-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 완화
 - * 석유화학산업 협력업체 대상 직업안정기관장의 인정시 지원대상 포함('25.上, 지침 개정)
- (석탄화력) 태안, 하동 등 폐지 예정 발전소 지자체(충남·경남도)와 협업하여 이·전직 및 전환배치 위한 훈련 등 고용안정 지원('25.3월)
- (전망체계) 한국은행, KDI, KLI 등 주요 연구기관과 분기별 합동모니터링·분석 → 고용동향 점검·전망 체계 고도화
 - 고용상황 악화 시 근로자 고용안정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과거 금융위기 사례 등 참고하여 주요 사업별 대응 방안 마련
 - * [예시]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 확대
▲ 실업자 훈련비 인상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요건 간소화 등

▣ 대상별 맞춤형서비스 업그레이드

□ 청년, 빠른 취업을 위한 촘촘한 지원

- ('쉬웠음' 청년) 교육부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5만명 발굴
 - 청년고용올케어를 통해 심리상담 등 일상회복 지원,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연계('25.1월~)
 - * 現 8개 대학 시범운영 중 →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
 - 또래지원단 등 신설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로 확대(6.2만명)
- (일경험) 지원대상·인원 확대하여 채용트렌드 변화 적응 지원
 - * ('24) 4.8만명: 미취업 청년 등 → ('25) 5.8만명: 고교생, 고졸청년 등 지원대상 세분화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가점, 우수기업 홍보 등 기업 참여유인 확대
- (빈일자리)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대상 훈련수당(+20만원), 기술연수(650명), 근속장려금(2년 최대 480만원, 4.5만명) 신설
 - 산업 수요를 고려한 '청년 경력개발센터' 신설('25년 20억원, 5개소)
- (첨단훈련)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 선호 KDT 첨단인재 양성(4.5만명)
 - * AI(과기부), 반도체(교육부), 바이오헬스(복지부), 메코업(환경부) 등

□ 일하는 부모, 출산·육아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활용 적극 지원

- (전폭적지원) 육아지원 3법 시행, 현장 활용·확산 적극 지원
- (中소활용제고) '고용부-지자체-신한금융' 협업 통해 대체인력 채용한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원 지원
 - * 사업주 1,640만원(고용부 1,440만원+신한금융그룹 200만원) + 근로자 최대 200만원(지자체)

-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평등상담지원관, 일육아 동행플래너 등을 통해 1:1 맞춤형 상담·안내 실시
- 육아친화 중소기업 우수사례 발굴·공유(중기중앙회 협업)
- (자율개선·확산)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도입 추진
 - * 기업별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공시
 - 근로자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홍보
 - * 전기요금납부서, 서울우유팩, 우체국 택배 상자·테이프 등에 홍보문구 삽입

□ 중장년,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경력설계)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협업 체계 구축하여 40 ~ 50대 대상 맞춤형 경력(재)설계 지원(3만명)
 - * ▲ [재직자] 경력 상담·분석 + 개인별 생애경력 제시
 - ▲ [구직자] 경력 맞춤형 훈련 + 직무경험 + 보조금 패키지 지원
 - 우수 훈련기관을 권역별 생애설계지원센터로 지정(8개소, 시범운영), 경력설계와 훈련을 원스톱으로 제공
- (훈련지원) 경력 특성을 고려한 2차 베이비부머 맞춤형 훈련 15만명 제공('25년 3.5만명→ '26년 5만명→ '27년7만명)
-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고, 근로자 및 기업의 선택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고용 로드맵 추진(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자율적 확산 유도
 - * (現) 정년도달 근로자 전부 계속고용 시 지원 → (改) 일부 계속고용 시 지원

□ 장애인, 역량개발 및 일자리 기회 확대

- (규제개선)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개선 추진(「장애인고용법」개정안 계류 중)
 - * 계열사간 공동출자 제한 규제 완화, 의료법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특례 신설
 - 작업·편의시설개선, 추가고용희망시최대5억원추가지원(기업당10→15억원)
- (직무개발) 발달장애인 적합직무 신규 개발(現36개 → 42개)
 - * [예시] 체험제품소독(정보통신업종), 다회용기수거세척(IT업종), 의료소모품관리(의료업) 등
 - 장애인고용컨설팅(500개소)을 통해 신규 직무 발굴 후 채용 연계
- (역량향상) 디지털 훈련센터 지속 확대(10개소 → 13개소)하여 장애인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 제공

③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 (노사법치) 노사불문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 기조 유지
 -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 실시, 필요시 컨설팅으로 연계하여 자율적인 개선 촉진
 - * [예시] 불법파견 적발 사업장 →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지원 연계
 - 경제·민생과 밀접한 핵심 사업장은 전담 관리를 통해 법 준수 유도, 모범기업은 적극 발굴·홍보
- (약자지원)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하는「노동약자지원법」제정 추진('24.12.31. 의원 발의)
 -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지원사업 신설·확대('25년 160억)
- (원하청 상생협약체)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지속 발굴·확대, 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
 - * ['24년] 5개 업종(조선업, 자동차부품업, 석유화학업, 경남-항공우주제조업, 충북-식품제조업) → '25년 추가 발굴 추진
-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소사업장 대상 퇴직연금 가입 점진적 의무화 추진(법 개정 추진, '25.下)
 - * [예시] ▲법 개정 후 1년 이내: 100인 이상 → ▲2년 이내: 30~99인 → ▲3년 이내: 10~29인 → ▲4년 이내: 5~9인 → ▲5년 이내: 5인 미만
 - 가입 사업장 대상 지원 방안 마련(관계부처 협의)
-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시간 → 소득으로 변경하여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고용보험법」개정안 등 국회 계류 중)
 - 국세청 협업을 통해 미가입자 발굴·가입 노력 지속
- (5인 미만 근기법) 현장실태 고려,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방안 논의 추진(경사노위)

□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24.12.19.) 이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신속 개정('25.1월)
 - 직무·성과 기반 임금체계 개선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연계
 - 업종별 직무 특성 고려한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실시 ('25년 60개사)
- (유연근로)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 활성화
- (외국인력) '제때'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 고용허가 발급·입국기간 단축 등을 통한 외국인력 신속 도입
 - * ▲ 신청주기 확대(연 4→5회) ▲ 사업주 평가항목 간소화 ▲ 입국 관련 법무부·외교부 협업
- 국내 특화훈련 업종 확대(조선업 등 6개 → 뿌리산업 추가) 및 송출국 현지 특화훈련(조선업) 실시
- 장기근속자 체류기간 연장 추진(「외국인 고용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 * [現] 4년 10개월 체류 후 출국·재입국 필요 → [改] 출국·재입국 없이 최장 10년 연속

□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 (경사노위) 계속고용(인구구조 위기대응), 일·생활 균형(근로시간, 일하는 방식 변화) 관련 과제 중심으로 노사정간 공감대 지속 형성
 - 지역노사민정을 통해 노동약자·영세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중층적 대화 활성화
- (근로시간 선택권) 반도체특별법 지원 및 근로시간 제도개편 여건 마련
 - * 건강권 보호 +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 다양화 → 현장 노사 의견 수렴(1월~, 중기부 협업)
- (임금체계 개편) 연공성 완화, 직무·성과 반영을 위한 개편 지원

㉔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 중소기업 안전역량 향상 지원

- (컨설팅) 사망사고 고위험업종(4개) 특화 컨설팅 등 중소기업 대상 집중 실시(3.4만개소), 안전조치 이행 여부 엄격히 사후관리
 - * ①선박건조·수리업, ②기계기구·금속제품제조업, ③화학고무제품제조업, ④목재종이제품제조업
- (재정지원) 사업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안전장비 지원 확대(62개 지정품목 + 자율품목 신청제)
- (대중소협력) 대기업이 하청업체 대상으로 안전기술 공유, 공정개선 지원 시 정부 행·재정적 뒷받침 확대
 - * [안전보건상생협력] 재해 이력 있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 사후점검 신설('25년 130억)
 - [안전동행지원사업] 50인 이상 사외하청업체 지원 대상 포함('25년 3,320억)
 - 조선·철강 등 업종별 리더회의를 통해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확산
- (위험성평가)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음식·숙박업 등 업종별 표준모델 개발 확대('25.1월~)
 - 우수기업이 직접 노하우 공유하는 사업주 위험성평가 교육 제공(100회)
 - 노사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 발굴·개선 지원
 - * 근로자 참여 우수사례 확산, 인정사업장 재정지원 가점 + 중대재해시 산재보험료 환수(보험료징수법, '24.10.14. 발의)

□ 산업안전 취약분야 맞춤형 관리

- (배달종사자) 도로 이동, 물건 전달 과정의 '위험성평가 모델' 확산, 폭염·한파 대비 '쉼터 확대'('25.上)
 - 배달플랫폼 협업하여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 지원('25년 4억원)
 - * 노후 이륜차 무상정비, 직종별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
- (하청근로자) 원·하청간 소통체계 구축, '원청의 고위험작업 허가절차'운영, 혼재작업 관리 등 하청근로자 보호 위한 원청의 역할 명확화
 - * 「원·하청 안전관리 역할 가이드라인」마련('25.上)
- (외국인근로자) 비언어적·직관적 콘텐츠에 기반한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 신설, '25년 23억원)
 - 사업장 내 외국인 안전리더 활용하여 핵심 안전수칙 반복·강조 교육
 - * ①안전장치 해제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금지, ④작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 근로자 건강보호 확대

- (폭염·한파) 온열질환 예방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 규정 신설('25.6월)
 - * ①냉방·통풍장치 설치, ②작업시간 조정, ③적절한 휴식 부여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재정지원 확대('25년 200억)
 - * 온습도계,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환기장치, 응급키트 등
 - 한파 대응 현장점검(농·축산업종 외국인고용사업장 중심, '25.1월)
 - *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여부, 숙소 및 휴게시설 등 점검, ▲난방시설 가동여부 및 화재예방 점검 → 3대 안전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지도·안내
- (과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지원(1월~, 2만명), 진단결과에 따라 건강상담·정밀검사 등 사후조치
 - * 고혈압·당뇨 발병 위험자, 야간작업 건강이상자, 55세 이상 고령자 등
- (직업성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발암성 물질 15종 → 19종)하여 새로운 발암성 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추적관리

□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

- (산업용로봇) 설치 현장에 대한 안전성 확인 의무화
 -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 정비('25.上)
- (신기술활용) 부처 협업(과기부, 중기부)을 통해 스마트 안전기술 확산
 - * AI를 활용한 자동정지기술 등 지게차 탑재 기술개발 추진
 - 민간 시장에서 입증된 우수한 스마트 안전장비 중심으로 지원

㉔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 관계부처·기관 협업으로 통합적인 일자리 매칭 지원

- (고용센터 혁신) 지자체, 취업·훈련기관, 복지·금융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고용센터 중심으로 통합 서비스 제공
 - * [취업기관]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 [훈련기관] 폴리텍, 인력공단, 민간위탁 훈련기관 등
 - [복지·금융기관] 주거복지센터, 정신건강센터,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 (우수기업 확보) 관계부처와 함께 우수기업 발굴, 청년 선호 일자리기회 확대
 - * ① 대학 장학생 정보와 고용보험DB 연계하여 미취업 청년 선제적 발굴 <교육부>
 - ② 첨단산업 소관 부처 협업으로 직업훈련 질 제고 <과기부, 복지부, 환경부 등>
 - ③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위한 채용행사에 우수기업 참여 <산업부, 중기부>

□ 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

- (AI 노동상담사)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AI기반 대국민 기초 상담 제공
 - * [상담분야] 임금·퇴직금·실업급여 → 모성보호, 산업안전보건분야 등으로 확대
- (고용24) 구직자 특성 고려한 일자리·직업훈련 추천 구인기업에는 AI 활용한 구인공고 자동생성 서비스 개시
 - 빅데이터 기반으로 취업·채용확률 분석하여 구인-구직 매칭률 개선
- (산재위험경보) 지역별 재해 데이터 분석, 선제적 위험경보 발령
- (드론감독) 건설업, 조선업 등 감독 시 드론 활용

□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신뢰성 향상

- (전문가인증제) 실무경험, 전문지식 등이 우수한 직원을 전문가로 인정하는 인증제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 * [분야] ▲ 고용분야 ▲ 노동분야 ▲ 산업안전분야 [단계] ① 베테랑 → ② 마스터
- (역량향상) 법무부, 경찰 협업으로 감독관 교육 질 제고
 - 과거 유사 사례 정보 제공 등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 개발하여 내부 업무 효율성 증대

IV.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뀔니다.



부가세영세율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 재정환율

통 화 명	12월 27일(금)	12월 30일(월)	12월 31일(화)	1월 2일(목)	1월 3일(금)
미 달 러 (USD)	1462.90	1474.10	1470.00	1470.00	1468.30
위 안 화 (CNH)	200.19	202.38	201.27	201.27	200.57
일 본 엔 (JPY)	927.00	934.31	936.48	934.67	932.19
유 로 화 (EUR)	1524.85	1537.85	1528.73	1521.96	1507.43
영 국 파 운 드 (GBP)	1832.21	1855.38	1843.67	1839.41	1817.76
캐 나 다 달 러 (CAD)	1015.16	1023.40	1023.96	1022.50	1019.16
홍 콩 달 러 (HKD)	188.32	189.89	189.30	189.23	188.80

통 화 명	1월 6일(월)	1월 7일(화)	1월 8일(수)	1월 9일(목)	1월 10일(금)
미 달 러 (USD)	1466.80	1470.80	1455.40	1453.20	1458.20
위 안 화 (CNH)	200.09	199.85	198.25	197.89	198.33
일 본 엔 (JPY)	931.60	932.48	920.00	917.51	922.42
유 로 화 (EUR)	1511.39	1527.79	1505.10	1499.41	1502.02
영 국 파 운 드 (GBP)	1822.21	1840.93	1815.68	1796.66	1794.75
캐 나 다 달 러 (CAD)	1015.40	1026.16	1013.16	1010.75	1012.78
홍 콩 달 러 (HKD)	188.57	189.16	187.15	186.79	187.38

통 화 명	1월 13일(월)	1월 14일(화)	1월 15일(수)	1월 16일(목)	1월 17일(금)
미 달 러 (USD)	1460.70	1471.30	1463.30	1460.20	1454.70
위 안 화 (CNH)	198.70	200.01	199.14	198.74	198.26
일 본 엔 (JPY)	925.69	934.81	926.43	933.69	937.25
유 로 화 (EUR)	1495.83	1508.89	1508.08	1502.84	1498.70
영 국 파 운 드 (GBP)	1782.49	1797.86	1786.54	1786.77	1779.75
캐 나 다 달 러 (CAD)	1012.93	1023.90	1019.58	1018.55	1010.21
홍 콩 달 러 (HKD)	187.58	188.96	187.92	187.54	186.79

통 화 명	1월 20일(월)	1월 21일(화)	1월 22일(수)	1월 23일(목)	1월 24일(금)	1월 31일(금)
미 달 러 (USD)	1455.80	1453.00	1437.90	1434.30	1437.10	1433.30
위 안 화 (CNH)	198.29	198.01	197.56	197.14	197.39	197.26
일 본 엔 (JPY)	931.26	934.59	923.18	916.84	921.01	927.88
유 로 화 (EUR)	1495.62	1514.46	1496.21	1492.75	1496.74	1488.84
영 국 파 운 드 (GBP)	1771.71	1792.13	1773.79	1765.70	1774.82	1779.87
캐 나 다 달 러 (CAD)	1005.35	1016.01	1002.51	996.28	999.37	988.07
홍 콩 달 러 (HKD)	187.01	186.75	184.69	184.17	184.49	183.92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증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증개 홈페이지(<http://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